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847-01

최종연구결과보고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적용방안 연구

2014. 12. 5

연구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혜선·문기석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I. 서론

- 1. 연구추진배경 ..... 1
- 2. 연구내용 ..... 1

## II. 유사 제도 운영 현황

- 1. 무역조정지원제도 ..... 2

## III. 유사 제도와 피해보전직불제 비교 검토

- 1.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비교 ..... 31
- 2.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시사점 ..... 53

## IV. 미국 무역조정 지원제도 概況 -- 농업 TAA를 중심으로

- 1. 배경 및 연혁 ..... 61
- 2.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대상 TAA 프로그램의 개요 ..... 66
- 3. 농업 TAA(Agricultural TAA)의 도입 — 2002년 무역법 ..... 67
- 4. 미국 농업 TAA의 미래와 과제 ..... 71
- 5. 소결 ..... 75

## V.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방안

- 1. 방안1 ..... 75
- 2. 방안 2 ..... 80
- 3. 방안 3 ..... 83
- 4. 공동개선방안 ..... 84

VI. 전문가 자문의견 .....	94
--------------------	----

**별첨 1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각종 서식**

1. 무역피해사실입증서 .....	122
2. 무역조정계획서 .....	132

별첨 2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인과관계 조사 결과 .....	139
--	-----

**별첨 3 미국 TAA 관련 자료**

1. 미국 농업 TAA의 실제 운영 사례 .....	142
2. 미국의 입법례 .....	148
3. 기타 자료 .....	154

# I. 서론

## 1. 연구추진배경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보전 제도는 제7조(지급기준) 및 제8조(산출방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격하락 및 수입량 초과)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지급기준 충족여부 및 지급금액 산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의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고 기재부 차관 외 기타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된 비정기적 회의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기체결 수개 FTA의 순차적 발효로 인하여 비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지급기준 충족여부와 지급금액의 적정액을 산출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농업인들 역시 FTA 이행으로 인한 품목별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간접적 피해까지도 보전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내외 유사 제도를 검토하여 이를 피해보전직불제에 적용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유사제도운영 현황으로서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미국 TAA제도의 내용 및 현황, 현행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도와 유사제도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시사점 발견,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 II. 유사제도 운영 현황

### 1. 무역조정지원제도

#### (1) 개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에 도입. 근거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무역조정법’)은 당초 2006년 제정 당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법명을 변경함

도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제도의 도입배경으로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었던 농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법령은 부재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sup>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부터 '14년까지 총 1,57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2) 신청요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용자 및 상담지원으로 이루어진 무역조정지원(무역조정법 제6조, 제8조, 제9조)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무역조정법 제5조의2)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

---

1)

으며, 각 사업에 대한 신청요건은 상이함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조정법 제조의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행해짐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

①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출처 : 2014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②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① 요건(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③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은 무역조정법 제조의2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기업 요건〉

①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출처 : 2014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②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의 증가가 ① 요건(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두 사업 모두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과 무역조정법 시행령 별표<sup>2)</sup>에서 정하

2) 1 2 2 , < >

	A
	B
	C
	F
	351
	360
	491



는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3) 지원절차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두고 지정신청과 상담접수 등 실제 지원내용 집행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무역피해사실입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함(서식 별도 첨부)

- 기업개황 : 개요, 연혁, 관계회사, 경영진, 주주 현황
- 무역피해에 관한 사항 : ① 무역피해품목이 같은 종류의 상품인지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② 수입증가는 절대적 증가의 경우와 상대적 증가의 경우(국내생산에 비하여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나누어 기재, ③ 기업의 심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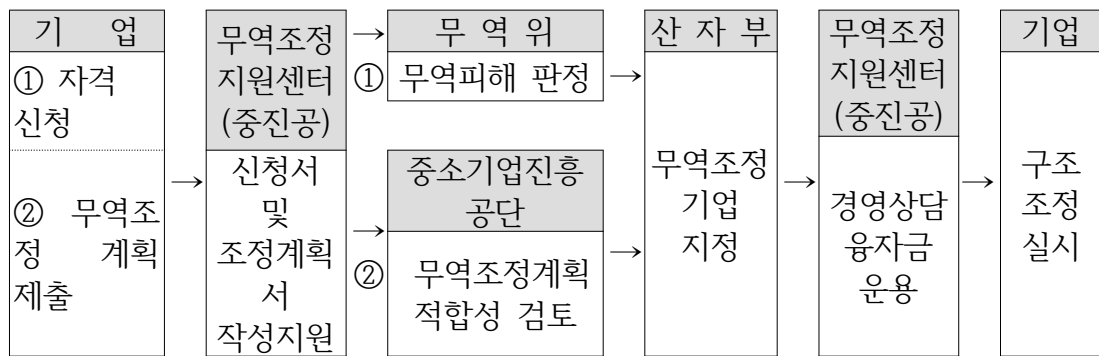
	51
	6110
	6411
,	84
	851
	852
	853
,	854
	87
	9022
,	9023
	911
	9123
	9124
	9129
	94
가	97
가 가	98
	99

피해에 대한 증빙은 매출에 관한 사항, 생산에 관한 사항,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가동률에 관한 사항, 고용에 관한 사항, 재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기재, ④ 수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판매가격 현황, 기업의 경영지표 현황,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품현황, 수입외의 요인이 기업 매출 및 생산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기재하고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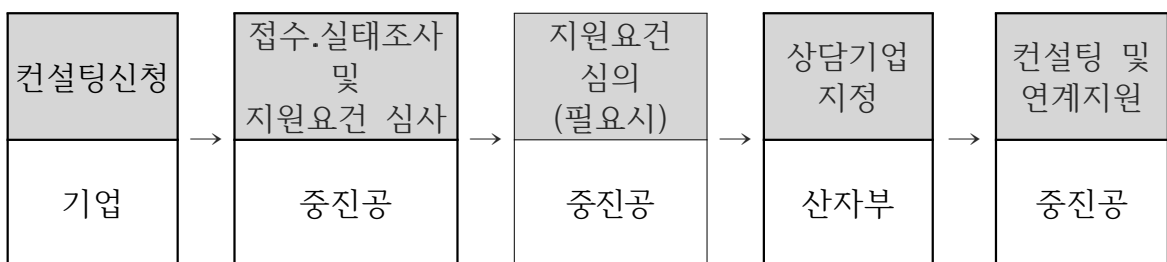
무역피해유무에 대한 심의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조정 계획 수립 적합성 검토를 진행.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함

####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무역조정법 제20조에 따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제도 절차>



#### (4) 지원내용

##### 1) 정보제공

무역조정법 제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2) 용자지원

무역조정법 제8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다음의 자금을 용자할 수 있음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자금,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자금을 용자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용자지원신청서에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용자금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용자지원의 타당성 평가 및 용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여부 및 금액, 지원조건 등을 결정함

#### <용자지원>

① 지원규모 : 14년도 기준 95억원,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② 용자지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뉨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③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④ 용자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⑤ 용자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 제출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평가결과(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약정 체결 및 대출

○ 사후관리

-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⑥ 용자제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3) 상담지원

무역조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과 무역조정지원 상담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지원규모는 4억원

상담지원은 상담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상담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에게 가능함.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4,000만원 이내(소요 비용의 80%이내)

상담지원분야는 경영·기술전 분야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 4) 출자지원

무역조정법 제10조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자금 출자 비율을 달리함.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50이내,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비율산정시 다음의 사정기준에 따라 가중평균을 정하여 신청금액을 상한으로 계산함)

출자비율	무역조정지원기업 투자계획 (가중치 : 40%)	업무집행 조합원 출자비중 (가중치 : 30%)	중진공 출자전 결성규모 (가중치 : 30%)
50% 이내	50% 이상	결성금액의 10% 이상	100억원 이상
30% 이내	30% 이상 50% 미만	결성금액의 7.5% 이상 10% 미만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 이내	30%미만	결성금액의 5% 이상 7.5% 미만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5) 후속조치

### 1) 지정취소

산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필요적 지정취소), ②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필요적 지정취소), ③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 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무역조정계획서,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산자부장관이 지시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지원금 환수

산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받은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3) 보고의무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

에 산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 등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출입·검사 등

산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전에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이행촉구 및 경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명령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산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음

#### (6) 무역피해의 판단

무역조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는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함



## 1) 무역피해

무역피해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p>법에 따른 요건(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li> <li>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li> </ol>
<p>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예상의 기준 (시행령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기업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무역피해가 발생하였고,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하였을 것</li> <li>-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li> </ul> </li> <li>2. 해당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li> <li>-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상기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li> </ul> </li> </ol>

<무역위원회 고시에 따른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 예상 기준>

<p>심각한 피해</p>	<p>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함</p>
---------------	---

심각한 피해 예상	<p>1. 신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p> <p>① 심각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p> <p>②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p> <p>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지 여부</p> <p>④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p> <p>2. 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함</p>
-----------	---

## 2) 무역피해품목

무역피해품목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함

### <시행령에 따른 판단>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	<p>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p> <p>2. 제공수단, 목적·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p>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서비스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위원회고시에 따른 판단〉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에 따름
1. 상품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소비자의 평가,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 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이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보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기능(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로 보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서비스로 봄

**3) 심의기간**

무역피해 심의기간은 30일.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심의대상기간**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의 범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 또는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1년의 범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피해발생기간)과 그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비교동일기간)을 심의대상기간으로 함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여부 또는 그 수입증가와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를 포함)의 기간을 심의대상기간으로 할 수 있음

#### 5)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①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②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서비스 공급) 금액 또는 물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수입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6)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인지를 판단하며, 무역위원회는 어느 하나의 검토결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청기업의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②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이 아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을 대체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 여부

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이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함

## 7) 무역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단은 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②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③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④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⑤ 기타 전문가로 구성

조사방법으로는 신청서류 검토,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검토, 현지조사, 질의서 조사,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등이 있음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무역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및 심의할 수 있음

## 8) 무역피해 심의

무역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함. 위원회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심의하여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가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참고1 <무역위원회의 구성>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위원회직제
- 근거조항 : 법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현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 및 전공

- 위원장 : 전주비전대학 총장/경영학
- 위원1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제학
- 위원2 :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 연구위원/무역학
- 위원3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학
- 위원4 : 법무법인 원 변호사/계약학
- 위원5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 위원6 :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무역학
- 위원7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법학
- 위원8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정학

참고2 <무역위원회 무역피해 조사 담당자 인터뷰 내용>

- 무역피해 조사보고서 또는 무역피해 심의 의결서 : 정보 비공개
  - \*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사개시 여부, 산업피해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령」에는 내용 공개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음
- 무역피해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과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요령」대로 운영  
(제도 만들 당시 덤핑 등 관련 제도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와 유사하게 고안하였으므로 그에 준하여 운영하되, 조사기간과 수혜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역피해가 입증되면 되는 것으로 운영)
- 기업이 제출한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기초로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회계자료는 중진공 소속 회계사 활용
- 수입증가와 무역피해 인과관계 조사 시 산업동향 파악은 무역위원회 조사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연구원의 연구원 도움을 받기도 함

참고3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 \* 반덤핑제도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내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 조사내용 : 수입물량(무역피해품목의 동종여부 및 수입증가여부), 피해(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 동종물품 해당여부

-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 등을 비교
- ① 물리적 특성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판단
- ②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국내수입자, 수요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 조사
- ③ 기능 및 구성요소 : 기능의 경우 대체 사용 가능성 검토
- ④ 제조공정 : 생산공정의 동등 또는 유사성 검토
- ⑤ 유통경로
- ⑥ 기타 이해관계자 요청 검토

○ 덤핑물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판단

-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동종물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②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③ 기타 요인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함
- 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동종물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동종물품 판매량 변동추이, 덤핑물품 및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이 검토(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서 동종물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 검토)
- ②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판매 또는 동종물품가격의 하락초래, 또는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 검토
- 기타 요인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검토 : 덤핑물품이외의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율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 검토, 소비증가여부 및 소비패턴의 변화 검토, 수출동향 검토,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검토,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검토



○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여부 판단

- 위원회는 무역조사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를 작성

- 판단례 :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는 동종물품의 판매물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덤핑물품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됨으로써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억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량 감소, 가동률 저하, 매출 및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는 덤핑물품의 수입증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함

위원회는 덤핑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이외 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국내소비의 변화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기타요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중요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참고4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지침(매뉴얼) 연구>

○ 연구자 : 더인터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 무역투자연구원

○ 연구시기 : 2007.7.

○ 수입과 국내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 ① 수입물량의 증감이 국내매출 등에 미친 영향
- ② 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 ③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① FTA로 인한 수입물품의 수입추이검토

가. 수입물품의 수입물량변동 추이

- 수입을 국내소비 등과 비교하지 않고 분석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물량과 금액면에서 분석

- 국내소비 또는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FTA로 인한 수입이 물량과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분석
  -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국내소비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거나 국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며 상대적 증가 여부분석은 국내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점유율에 의하여 분석
  - 국내소비는 국내생산품의 내수판매와 수입판매를 합한 것임
- 수입물량증가의 영향평가
  - 수입물품의 증감에 따라 국내산업의 매출 및 소비점유율 변동상황을 분석하여 수입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손익증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나. 수입물품의 수입가격변동추이

- 수입물품의 주요수출자 또는 수출국별 가중평균수입가격을 산출하여 분석기간동안 연도별·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비교함

② FTA에 따른 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분석

가.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 분석

- 1)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저가인지 여부를 분석함.
- 2) 국산품과 수입물품의 가중평균판매가격을 분석기간동안 연도별·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비교함.
  -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내생산품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 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이 규격 또는 성능 등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가격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함.
  - 국내생산품평균가격은 도매업자에 대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함.
  - 수입품판매가격은 CIF수입가격에 관세 및 제세, 통관비용(하역료, 창고료, 통관수수료 등)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되 수입자의 유통단계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국내생산품과의 유통단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적정유통마진을 추가로 가산함.

#### 나. 국내판매가격의 하락분석

- 조사대상기간동안 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비교하여 수입의 영향으로 국내생산품가격이 하락하였는지를 분석함.
-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생산원가와 판매관련비용의 변동상황을 분석하여 생산원가 및 판매비용으로 인한 원가하락추세 보다 국내생산품 가격의 하락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 하여 수입에 의한 영향 유무를 판단함.

#### 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price suppression)분석

- 1) 수입이 없었더라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을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함.
  -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내생산품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 생산원가 및 판매비용의 인상요인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 2)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의 연도별 또는 분기별 변동추세 분석

#### (4)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미친 영향분석

가. 조사대상기간중 국내생산자의 거래처별 판매물량과 금액을 거래처별 매출원장에 의하여 확인하여 산출함.

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판매수입 상실

1) 판매수입 상실액 = (적정판매가격 - 실제판매가격) × 판매량

○ 적정판매가격 =  $\frac{\text{단위당제조원가} + \text{단위당판매관비}}{1 - \text{적정영업이익률}}$

○ 적정영업이익률은 신청업체가 속한 업종의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상의 영업이익률 적용

(5) 기타 수입이외의 영향분석

가.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의 판매 및 손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수입의 영향과 비교형량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나. 수입 이외의 요인으로서 정상수입품의 물량과 가격, 소비패턴변화,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환율, 원자재가격 등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피해를 분석함.

## (7) 지정사례

2014년 7월 현재 54건 조사, 총 41개의 제조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무역조정 지원기업 피해판정 현황(14년 8월말기준)〉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신청건수	3	3	2		13	31	2	54
피해판정	2	3	2		8	24	2	41
피해없음	1				2	4		7
철회·반송					3	3		6

〈무역조정 지원기업 피해판정 세부현황〉

조사신청	품목	관련 FTA	판정내용
2008	수전금구류	EFTA	무역피해 없음
	산머루와인	칠레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칠레	무역피해 있음
2009	돈육가공	EFTA	무역피해 있음
	손목시계	칠레	무역피해 있음
	고등어	EFTA	무역피해 있음
2010	복분자	칠레	무역피해 있음
	골프웨어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2012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도료경화제	한-EU	무역피해 있음
	복분자주	한-EU	무역피해 없음
	밸브	한-EU	철회, 조사종결
	지육	한-EU	반송
	티셔츠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탈모방지 샴푸	한-EU	무역피해 있음
	초코릿	한-EU	무역피해 있음
	팔목시계	EFTA	철회, 조사종결
	에어필터	한-EU	무역피해 없음
	핸드백	한-EU	무역피해 있음
	핸드백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2013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방직기계용 베어링	한-EU	무역피해 있음
	와인	한-미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냉장고 부품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등산화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스포츠용 신발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스포츠용 신발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에어컨 부품	한-EU	무역피해 없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석유화학	한-싱가폴	무역피해 있음
	염모제	한-EU	무역피해 있음
	페인트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판유리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운동화	한-아세안	철회
	배전반&CTTS	한-EU	철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기초용 화장품	한-EU	무역피해 있음
	드레스화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골프웨어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의류	한-아세안	철회
	스프링	한-EU	무역피해 있음
	여성의류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2014	소나무제재목	한-칠레	무역피해 있음
	냉동오징어	한-칠레	무역피해 있음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기업 성공 사례>

<칠레산 와인으로 매출 급락한 회사의 산머루 농장관광화 >

- 지리산에서 산머루를 수확하여 와인 등의 과실주를 생산하는 해당회사는 한-칠레 FTA발효에 따라 칠레산 와인 수입 급증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45% 감소하는 상황에 처함
- 무역위원회는 칠레산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산머루와인과 소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회사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용자 4.5억원, 상담 16백만원을 지원함
- 해당 회사는 단순 농산물 가공에서 농장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시도
- 농협, 할인매장 등의 시중판매를 축소하고 인터넷 및 고객방문을 통한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 경로 재구성. 유통 축소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및 판건비 절감에 따라 수익구조는 개선됨
- 단순 과실주 제조에서 관광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산머루농장 방문객을 통한 매출이 증가됨 (관광농원 콘텐츠 추가개발 및 숙박시설 확대에 노력)

<값싼 유럽산 돼지고기, 친환경 돈육으로 소비자 공략>

- 한-EU FTA 발효로 인해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결국 해당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무역위원회로부터 무역피해를 인정받아 용자 6.27억원, 상담 37백만원을 지원받음
- 명품 돈육으로 승부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시작. 친환경 농가들과 무항생제 사육방식을 조건으로 계약. 항생제가 아닌 매실, 배, 콩 등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도록 함
- 친환경 명품 이미지를 강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친환경 유통업체로 판로를 확장. 삼겹살 직화구이기계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구이 전문점 프랜차이즈 설립을 추진 중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여 돈육 가공제품인 햄, 소시지, 돈까스 등을 개발하여 생산 제품을 다양화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 13 No.31,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 (8)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정 추이<sup>3)</sup>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06년 4월 도입됨

2006년 도입 당시 제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2007년 지원대상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법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8년, 2010년, 2011년에 일부 내용을 개정함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도입 당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음. 제도 도입 이후 실적이 미미하여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었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 실적이 낮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최근에 발효하였으므로 이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라는 점, 2011년 이전에는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였다는 점, 무역조정지원제도 전반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2011년 개정 이유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고자 함

---

3) KIEP, , 2012.3.30.,



2011년 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요건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되었으며, 상담지원의 경우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전년대비 5%(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정됨

<2014년 윤명희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또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한 부처간 이견 조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현행보다 격상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어 농어업인등 지원사항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산업군이 제조업 중심으로서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변화 없이 위원회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9)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비판

향후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단순히 지정 기준 완화나 절차 간소화 등의 세부적 정책 조정이 아닌 운영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비준과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FTA 국내대책본부의 주도 하에 피해 산업과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내부 협상이 비준 절차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카드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행정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피해 산업과 피해 기업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 협상과 부처 간 협의로 정해진 예산 하에서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임

둘째, 핵심 역량에 기초한 전업과 기존 사업의 완전 퇴출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업무에 국한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매칭 펀트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셋째, 시장 개방의 최대 피해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개방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에 사용하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음. 정부에 의해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감소나 실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기존 사회안전망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방식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함

넷째,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하에 개방 확대에서 오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예산의 집행 내역과 성과에 기초하여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년 무역조정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업 피해 보상 또한 지금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sup>4)</sup>

현재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무역조정계획서의 작성을 지원 중에 있으나 전문적인 컨설팅과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TAA와 같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2년) 및 전문성을 가지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컨설팅 할 수 있어야 실패 위험이 최소화되므로 체계적인 진단 및 이행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컨설팅이 요구됨

업종별(농축산 가공업, 의류 및 피혁제품 등), 분야별(경영 및 마케팅,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컨설팅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고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컨설팅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이 컨설팅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 있음

체계적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현행 고용안정망 차원의 지원과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sup>5)</sup>

### Ⅲ. 유사 제도와 피해보전직불제 비교 검토

#### 1.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

##### (1) 개요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용자 및 컨설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	--	---

4) , “ , ”, KERI Column. 2014.12.14.

5) , “ , “ FTA ?”, Trade Focus, Vol.13 No.31.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07년 4월 29일	04년 4월 1일
(2014 )	융자지원 : 95억 컨설팅지원 : 4억	100,478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31개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등 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업력 2년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업, 수도사업 등은 제외)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 요건 및 절차

	<p>&lt;무역조정지원 기업 선정요건&gt;          법 제6조 제2항          1.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1-1.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p> <p>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p> <p>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p> <p>&lt;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p>	<p>1. 법 제6조에 따른 요건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p> <p>2.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건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일 것          그리고</p> <p>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것          그리고</p> <p>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그리고</p> <p>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p>
--	---	---

<p>상당지원 기업 선정요건&gt;</p> <p>법 제5조의2 제1항</p> <p>1.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1-1.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p> <p>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p>	<p>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할 것</p> <hr/> <p>*협정이란 '13.12.31.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p> <hr/> <p>*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 1.15 시장점유율 10~30%미만 : 1.10 시장점유율 30% 이상 : 1.05</p>
<p>&lt;무역조정지원&gt;</p> <p>신청(기업) → 무역피해판정(무역위원회) → 무역조정계획진단(중진공)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산자부) → 용자지원, 컨설팅(중진공) →</p> <p>&lt;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p>	<p>1. 조사·분석 단계 신청(농업인등) → 접수 및 시·도에 보고(시·군·구) → 보고(시·도) → 조사·분석 지시(농림부) → 조사·분석 및 농림부에 보고(농업인등지원센터)</p>

	<p>상담지원&gt;  신청(기업) → 실태조사(중진공)  → 무역피해심의위원회(중진공) →  지원대상선정(중진공) → 컨설팅  지원(중진공)</p>	<p>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심의·의결 요청(농림부) → 품목  선정(농업인 등 지원위원회)</p> <p>3. 사업 신청 단계  품목고시(농림부) → 지급신청  (농업인등)</p> <p>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시·군·구 또는 읍·면·동)</p> <p>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현지(서면) 조사(시·군·구) → 학  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군·구) → 이의 신청 등 심사(심  사위원회) → 조사 및 심사결과  시·도에 보고(시·군·구) → 조사  및 심사결과 농림부에 보고 (시·  도)</p> <p>6. 자금 요청 단계  지급 신청 총액 산출, 조정계수  산출, 심의·의결 요청(농림부) →  조정계수 결정(농업인등 지원위  원회) → 농림부에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자금 요청(시·도) → 피  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p> <p>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 배정(농림부) →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시·군·구)</p>
--	---	--

	<p>8. 이행 점검 단계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환수(시·군·구), 사업 추진 상황 점검(시·도, 시·군·구, 농림부)</p> <p>9. 성과측정단계</p> <p>10. 사업 평가</p>
--	---

### (3) 수입피해 조사 비교

	<p>무역위원회에서 무역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 (조사단은 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②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③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④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⑤ 기타 전문가로 구성)</p>	<p>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농업인등 지원센터 (농림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출연연구기관,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기타 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함)</p>
<p>&lt;무역피해품목&gt;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이 같은 종류 또는 직접 경쟁 품목인지 여부 판단 -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p>	<p>&lt;조사·분석 대상품목&gt;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농축산물이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며, 조사·분석 품목의 선정은 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과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수입피해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모니터링 품목이 있으며, 농업인 등이 신청한 품목이 모니터링 품</p>	



<p>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판단</p>	<p>목에 포함됨(2014년의 경우) 정부가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기준으로는 수입관세인하여부, 국내 생산 여부와 수입 규모, 시장가격 존재 여부, 원형 보존(신선·건조 등) 및 소비대체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sup>6)</sup></p>
<p>&lt;수입증가&gt;</p> <p>①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p> <p>②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서비스 공급) 금액 또는 물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p> <p>* 심의대상기간 : 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의 범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을 심의대상으로 하나, 수입증가 여부 또는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을 심의대상기간으로 할 수 있음</p>	<p>&lt;가격요건&gt;</p> <p>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p> <p>* 국내 평균가격 조사 :</p> <p>가. 농업 등(축산업 제외)</p> <p>1)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가락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으로 함</p> <p>2) 가락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가락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p>

		<p>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함</p> <p>나. 축산업: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해 수집한 농가수취가격의 연간 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공급 자료상의 산지가격의 연간 평균값</p> <p>다. 위의 방법으로 평균값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p>
	<p>&lt;심각한 피해&gt; 해당기업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무역피해가 발생하였고,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하였을 것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피해에</p>	<p>&lt;총수입량 요건&gt;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p> <p>&lt;수입량 요건&gt;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p>

<p>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p> <p>&lt;심각한 피해 예상&gt;</p> <p>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 그리고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상가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p>	<p>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해당 연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p> <p>* 수입피해발동계수 :</p> <table border="1" data-bbox="868 645 1347 981"> <thead> <tr> <th colspan="2">시장점유율</th> <th>수입피해발동계수</th> </tr> </thead> <tbody> <tr> <td>협정상대국 수입량</td> <td>10% 미만</td> <td>1.15</td> </tr> <tr> <td>국내생산량+ 총수입량-</td> <td>10~30% 미만</td> <td>1.10</td> </tr> <tr> <td>총수출량</td> <td>30% 이상</td> <td>1.05</td> </tr> </tbody> </table>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협정상대국 수입량	10% 미만	1.15	국내생산량+ 총수입량-	10~30% 미만	1.10	총수출량	30% 이상	1.05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협정상대국 수입량	10% 미만	1.15											
국내생산량+ 총수입량-	10~30% 미만	1.10											
총수출량	30% 이상	1.05											
<p>&lt;인과관계&gt;</p> <p>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청기업의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p> <p>②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이 아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을 대체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 여부</p> <p>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p>	<p>*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인과관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관련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음</p> <p>&lt;인과관계&gt;7)</p> <p>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국내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간의 인과관계, 국산과 수입산의 대체관계</p>												

	<p>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중 어느 하나의 검토결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단</p> <p>*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인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함</p> <p>*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p>	<p>여부와 유통·소비구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음</p> <p>① 대체관계 여부 : 용도와 소비자 선호도 등 조사</p> <p>② 유통·소비구조 : 수입산, 국산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p> <p>&lt;수입기여도&gt;</p> <p>지원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의미하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함</p> <p>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p> <p>조정계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을 위한 지표로 규정되어 있음</p> <p>* 수입기여도를 포함한 조정계수를 통하여 인과관계의 경중을 따져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와 그에 따른 지원금을 산출함</p>
<p>신청서류 및 자료 검토, 현지조사, 질의서조사, 의견 청취, 이해</p>		<p>*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조사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p>

<p>관계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조사 실시</p> <p>위원회는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무역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할 수 있음</p> <p>① 자료 협조 :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서면에 의한 자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음</p> <p>② 현지 조사 :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음(중진공 소속 전문가 활용)</p> <p>③ 질의서 조사 :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p> <p>④ 의견 청취 :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p> <p>⑤ 이해관계인 회의 : 신청기업, 이해관계인과의 회의 개최 가능. 신청기업이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p>	<p>있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p> <p>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등 포함), 현장 방문 등</p> <p>① 통계자료 분석 : 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의 통계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 임산물유통데이터베이스시스템</li> <li>-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등</li> <li>- 기타 : 양재 화훼시장, 한국인삼공사 등</li> </ul> <p>② 현장방문 및 자료 요청 : 지역 농협,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양재양곡시장, SPC,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 등</p>
---	--

6)

, FTA  
: FTA  
:

, 2012 11 .

가

(4) 무역위원회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비교

	<p>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p> <p>* 제27조 제1항(무역위원회의 설치)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p> <p>* 제19조 제1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가 : FTA 가 가

( ) : 가

가 가 . 가

가

7) 2014 FTA  
2

<p>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p> <p>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p>② 상임위원은 1명,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 (무역위원회 직제 제3조)</p> <p>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li> <li>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li> <li>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li> </ol> <p>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p> <p>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p>	<p>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3항</p> <p>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p> <p>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p>
--	--

	<p>(무역위원회 직제 제4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li> <li>-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li> <li>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 검토</li> </ol> </li> </ul>	<p>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4항</p> <p>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li> <li>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li> <li>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li> </ol> <p>제1항 제2호·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 제2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p>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p>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p> <p>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p> <p>②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p> <p>③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p> <p>④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검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li> <li>2.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li> <li>3.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li> <li>4.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li> </ol> <p>⑤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p> <p>⑥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p> <p>⑦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p> <p>⑧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p>	<p>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p> <p>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li> <li>②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li> <li>③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li> <li>④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li> <li>⑤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⑥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li> <li>⑦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⑧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⑨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	---

<p>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p> <p>⑨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p> <p>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p> <p>⑪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p> <p>⑫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p> <p>⑬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p>	
<p>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p> <p>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p> <p>의결의 공개 :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함. 다만, 이</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9조</p> <p>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p> <p>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p>

<p>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p> <p>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p> <p>회의의 운영 :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p> <p>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함</p>	<p>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함</p> <p>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p> <p>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p> <p>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	---

	<p>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장소·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함</p> <p>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입통관실적</li> <li>2.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li> <li>3. 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li> </ol>	
	<p>무역위원회 직제 제5조, 제10조</p> <p>하부조직 : ①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둠</p> <p>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둠</p> <p>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p>	

<p>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포함</p> <p>공무원의 정원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8)과 같음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9)와 같음</p> <p>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5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p>	
---	--

8) 1

	48
( )	1
	1
	2
	2
	2
	15
.	1
	1
	8
.	1
	1
	5
	2
	6

9) 2

	47
--	----

(5) 지원사항 비교

(2014 )	용자지원 : 95억 상담지원 : 4억	100,478백만원
	<용자지원> 용자지원 범위 :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①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②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③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④ 지원 한도액 :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47
( )	1
	1
	2
	2
	2
	15
·	3
	1
	8
·	1
	1
	2
	2
	6

<p>② 운전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li> <li>-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li> </ul> <p>용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p> <p>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p> <p>분기별 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a href="http://www.sbc.or.kr">www.sbc.or.kr</a>)에 공지</p> <p>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년분기 종료일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일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p> <p>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p> <p>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p> <p>대출기간 :</p> <p>①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p>	
--	--

	<p>②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p> <p>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p> <p>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p> <p>&lt;상담지원&gt;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  상담지원 분야 : 경영·기술 전분야</p>	
<p>실적</p>	<p>2014년 7월 현재 54건 조사, 총 41개의 제조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p>	



## (6) 관련 규정 비교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제도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총 24개 조항</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 25개 조항</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6개 조항</p> <p>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고시) 총 30개 조항</p> <p>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총 22개 조항</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8조, 제21조, 제23조</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6조, 제22조</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 5개조</p> <p>사업시행지침서</p>
기관	<p>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무역위원회 관련 조항</p> <p>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2조</p> <p>무역위원회직제 총 11개 조항</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20조</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0조</p>

## 2.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시사점

### (1)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두 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다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

쟁력 회복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두 제도를 평면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제도의 규율과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한 후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도입할 필요 있음

### 1) 관련 규정 비교에 따른 시사점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관련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조항의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유사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근거법의 총 24개 조항이 모두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두 개의 고시(조항 각 30개, 22개)가 관련 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근거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약 5개 조항, 시행령·시행규칙상 약 5개 조항이 근거 조항의 전부이며,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지침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경우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정책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정책 집행기관의 재량이 필요 이상으로 확보된다는 오해를 할 우려도 있음. 특히 시행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 및 행정규칙과는 달리 집행기관간의 업무 처리 매뉴얼의 성격이 강하므로 시행지침의 내용 중 대국민적 성격의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인과관계라는 용어를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거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인과관계의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음

반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근거법 제6조 제2항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 중 두 번째 요건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12조에서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라는 조목 하에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항에서는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 이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 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며, 시행지침에서 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그 결과 피해보전직불제도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농업인에게 어느 만큼의 피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산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이 발생하게 된 것임. 따라서 법에서 직접 '조정계수' 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그에 따라 하부 지표인 수입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13조 이하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상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역위원회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무역피해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조사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회계·국제 통상 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됨. 조사 방법으로는 신청서류 및 자료 검토, 현지 조사, 질의서 조사,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이에 반하여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조사방법 및 절차를 규율하는 명문규정이 없음.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근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가 수입량 및 가격 조사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으로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법령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음. 다만,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발간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조사방법과 절차를 법령 등을 통하여 정책 수혜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신뢰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2) 기관 운영 비교에 따른 시사점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의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나, 실행을 근거법 제23조 및 근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전국 3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무역위원회 직제」 제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하부조직인 무역조사실내 불공정무역조사팀에서 무역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피해의 조사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이 담당하고 있음.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 지정여부를 심의함

이에 반하여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제도의 주관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실행은 근거법 제20조, 제23조, 근거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기관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특히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입피해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하면 근거법 제19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함

위와 같은 기관 운영의 차이는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불만사항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왔는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① 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무역조정계획서 작성부터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컨설팅 효율성 제고 요청<sup>10)</sup>, ③ 기업들의 피해 입증 부담의 경감 요청, ④ 저조한 운용실적<sup>11)</sup> 등이 주된 문제점 및 요청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있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정책 수혜자들이 불신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첫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주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무역위원회보다 강하여 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불충분함. 무역위원회의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나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둘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감정평가사 중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되

10) , FTA ? -

-, Trade Focus .

11) , KIEP .

는데, 이들 위원들이 전문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관련 문제를 심의·의결하기에 적절한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근거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학계전문가’는 어느 학계의 전문가인지 또한 전문가는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관련 분야가 어떠한 분야인지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의 기준은 어떠한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의 무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sup>12)</sup>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셋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불신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12)

- : /
- 1 : /
- 2 : KIEP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달리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절차 및 방법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 등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달리 조사·분석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사실 자체를 정책 수혜자가 원칙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정책 수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기초로 필요시 정책 수혜자의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필요시 정책 수혜자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조사 과정에서 정책수혜를 받으려는 자가 스스로 정책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이 통계자료(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한 정략적 분석과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책 수혜자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정책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추후에 예상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넷째, 무역위원회의 경우 산업피해 등을 심의함에 있어 대부분 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림. 즉 무역위원회의 재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반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정책의 주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므로 정책적인 판단을 추가하여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심의·의결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오해 소지를 근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조사·분석 기관의 조사·분석 과정의 투명화와 조사·분석 과정에서의 정책 수혜자에 대한 역할 부여가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임

### 3) 제도 내용 비교에 따른 시사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품목으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 경쟁하는 상

품이란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반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같은 종류의 상품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하는 상품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는 않음.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품목이 아님에도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밀접한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품목 간 동질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현재 이러한 이질적인 품목 간 동질성을 수용한 경우는 오렌지와 감귤에 국한된다고 함.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직접 경쟁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만, 오렌지-딸기와 같이 같은 종류도 아니고 직접 경쟁하는 상품도 아닌 상품 간의 지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피해보전직불제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 입증시 피해사실입증서(별첨)의 제출을 통해 피해 입증의 대부분을 정책 수혜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입증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무역위원회의 조사단에서 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상 기업들의 피해입증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존재함. 반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피해입증과 관련하여 정책 수혜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입증 부담이 없는 것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여부 조사·분석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또한 향후 수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피해입증과 관련된 기초 자료 없이 정부가 피해여부의 조사·분석함에 따른 행정 부담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판정 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만을 판단함.



반면,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도모함. 따라서 인과관계 판정시 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통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하락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까지도 판단하여야 함. 즉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인과관계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정도까지도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인과관계 판정기관의 전문성확보가 유사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음

#### IV. 미국 무역조정 지원제도 概況 -- 농업 TAA를 중심으로

##### 1. 背景 및 沿革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도화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TAA는 미국의회가 ‘1962년 무역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일부로 처음 도입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체의 실시로 말미암아 수입물품과의 경쟁에 직면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설득하기 위함이었으며 1950년대부터 자유무역의 중장기적 혜택은 국가 구성원 전체가 누리게 되나 단기적 손실 및 비용의 부담은 특정 産業群이나 계층이 입게 되므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었고 1962년 이래 시행되어온 미국의 TAA는 그러한 주장의 결과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2007년부터 미국보다는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나 TAA를 시행하고 있다.<sup>13)</sup>

##### A. 미국 TAA 프로그램의 입법 취지와 근거

자유무역정책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생산자를 정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문제는 정치적이면서도

13) “ ” 2006 4  
7947 2007 4 29  
, , 12 1 (2007).

사회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통적으로 TAA 프로그램을 지지해왔으나 2009년에 경제부흥책(ARRA)을 도입할 당시 공화당은 연방예산 부족의 이유로 TAA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sup>14)</sup>

이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진행 중이던 FTA(한미 FTA 포함)들의 일괄 타결의 필수 조건이라며 TAA의 확대를 주장하였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2009년 ARRA가 통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에 있어 TAA의 근거논리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sup>15)</sup>

첫째는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로, 비록 시장개방이 사회전체의 복리 증진에는 기여하나<sup>16)</sup> 단기적으로 특정 국내 산업이 조정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1974년 TA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하면서 미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형평의 논리는 무역 조정에 따른 전반적 혜택을 누리는 국민전체가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구조적 장치의 설립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며, 이는 국가가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원칙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채한다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이라는 연방정책의 비용을 소수 근로자에게 떠맡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sup>17)</sup> 자유화의 비용을 전체에게 확산시키자는 이 논리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정책의 공식입장이었다.

둘째로 거론되는 근거로는 TAA가 갖는 정치적 효용성이다. TAA는 자유무역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치적 도구이니, 즉 자유무역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이익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동참을 설득하는데 있어 TAA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적 도구라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TAA가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상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호소력 있는 정책수단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sup>18)</sup> 하지만 여

14)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1 (2013).

15) , : TAA , 30  
3 , 40 (2005).

16) 가 가  
. Andrew B. Bernard and J. Bradford Jensen, *Exporting and Productivity in the US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0, no. 3, 343-356 (2004).

17) *Int'l Union v. Marshall*, 584 F.2d 390, 395 (D.C.Cir. 1978).

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최근 몇 년간 TAA는 미국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적자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갈수록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보험금(burial insurance)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sup>19)</sup>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으로 TAA 프로그램이 기존의 생산 자원을 좀 더 신속하게 재분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시장의 외부성이 효율적인 조정과정을 저해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기술 훈련 혹은 현금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이나 근로자의 항구적인 경쟁력 상실을 막고 다시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근거이다.<sup>20)</sup> 초기 TAA에 적극적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심지어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무역 경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담의 일부는 반드시 연방정부가 감당하여야한다. 정부는 국가 무역정책의 결과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sup>21)</sup>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TAA 의 근거 및 입법취지는 주로 무역자유화 비용 均擔과 특정 산업이나 사회 계층의 충격 완화, 그리고 무역자유화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필요성 등에서 복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sup>22)</sup>

## B. 1950년대의 입법시도

흔히 Bell 위원회라 불렸던 상호안전보장공공자문위원회(The Public Advisory Board for Mutual Security)가 트루먼대통령의 재임 시 최초로 TAA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안하였으나 1954년 대외경제정책위원회(The Commission on Foreign Economic Policy)의 보고서에서 낮은 관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집단

18) Bonaham C.E. and M. Flower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18 *Gato J.* 1, 65-74 (1998); , : TAA , 10 .

19) Erika Kinetz, *Trading Down: The U.S. Shortchanges Its Outsourced Workers*, 311 *Harper's Magazine*, no. 1862, at 62 (July 2005).

20) , : TAA , 41 .

21) Kinetz, *Trading Down: The U.S. Shortchanges Its Outsourced Workers*, 311 *Harper's Magazine*, at 63.

22) TAA . CRS Report R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

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sup>23)</sup>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John F. Kennedy가 83차 연방 의회에 최초로 TAA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Kennedy 의원은 다시 84차 의회에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체결권을 제공하는 법률의 개정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다시 제출하나 역시 통과되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입법시도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으나 1950년대의 입법시도의 결과로 무역 정책의 토론 時 TAA가 계속 거론되는 결과를 낳았다.

### C. 1962년 무역확대법과 TAA

케네디 행정부의 임기 도중 1962년 무역확대법의 일부로 마침내 TAA의 입법이 이루어진다.<sup>24)</sup> 1962년 무역확대법은 대통령에게 전례가 없는 정도의 관세 引下權을 부여하고 무역자유화의 국내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TAA를 채택한다. TAA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수입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하던 기존의 보호 방식은 폐기되게 된다.

1962년 무역확대법은 국내 산업 전반이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TAA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이주비용 지원 그리고 실업수당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대상 프로그램은 대출 지원, 기술 지원, 감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두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 직접적인 재정이나 기술 지원의 수혜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이유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 무역확대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은 관세인하가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으며(“caused in major part by” 라는 표현이 법률에 담겨있음)수입증가가 기업이나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주된 원인이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지워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23) Comm h on Foreign Economic Policy,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H.R. Doc. No. 83-209, at 52 (1954).

24) Trade Expansion Act of 1962 (codified in scattered sections of 19 U.S.C.).

입증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절차였으므로, 그 결과 1963년에서 1969년까지 12개의 기업과 여섯 명의 근로자가 TAA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된다.<sup>25)</sup>

이러한 실망스러운 거부율과 비효율성에 대해 미국노동자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이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한다.<sup>26)</sup> 따라서 초기의 TAA는 실패작이었으며 특정 산업이 입는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혜자격요건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다.

#### D. 1974년 무역법과 TAA의 현대화

현대화된 TAA프로그램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도입되었다.<sup>27)</sup> 1974년 무역법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했던 수혜자격요건의 문턱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인들은 수입의 증가가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수입의 증가가 근로자의 직장이나 기업의 매출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음(“contributed importantly to a decline”)만 입증하면 되었고 “중요한” 기여는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다른 기타 원인들보다 더 중요할 필요는 없다”(“a cause which is important but necessarily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cause”)라고 정의되었다. 1974년 무역법은 또한 자격요건의 완화에 더하여 신청서의 심사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60일로 단축시켜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게 된다.

1974년 무역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재도입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ies)에 대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대출지원과 기여금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아서 1982년에 폐지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974년 무역법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

---

25)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6 (2013).

26) J.F. Hornbeck, *id.*

27) Trade Act of 1974, Pub. L. No. 93-618.

고 절차를 간소화 시킨 무역정책 입법에 있어서 TAA에 대한 의회의 지원 의지가 드러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 2.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대상 TAA 프로그램의 개요

상기 하였듯이 초기의 TAA 프로그램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근로자 TAA 프로그램의 규모가 가장 크며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1974년 입법 이래 주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매주 현금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구직 비용이나 이전 비용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농민 등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 백악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전형적인 근로자는 공장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고졸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46세이고, 연간 자체 기본 예산만 2억2천만 달러이고 2002년부터 5억2천만 달러로 한시적으로 증액되어 운영되고 있다.<sup>28)</sup>

기업대상 TAA의 규모는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주관하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만이 제공된다. 연 평균 집행액은 8백만에서 1천3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1986년에 금융지원이 폐지되면서 심각하게 퇴색되었으며 현재는 기업 대상 컨설팅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9)</sup>

지역사회 대상 TAA도 미국 상무부에서 주관하며 주로 직업훈련 비용과 기술학교 비용, 그리고 지역사회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1982년에 폐지된 후 2009년에 2억3천만달러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었으나 다른 연방 보조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1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1974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TAA는 짧게는 5주에서 길게는 6년 단위로 연장되어왔으며,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이 핵심으로 기업 대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규모로 운영되었다.

---

28)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Restoring and Reauthoriz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June 28, 2011).

29) TAA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 3. 농업 TAA(Agricultural TAA)의 도입 — 2002년 무역법

농업 TAA(ATAA)는 2002년 무역법의 통과로 도입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농민과 어민이다.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주관하나 지원 자격 심사의 결과는 미국국제무역법원(Court for International Trade)나 연방항소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무역법은 기존의 TAA를 확대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9천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ATTA를 도입한다. 기존의 TAA 프로그램으로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수입증가에 따라 문을 닫은 기업이나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단기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의회가 인정한 입법인 것이다.

2002년 무역법의 TAA에는 흔히 경기부양패키지로 알려진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 ARRA”)의 제정으로 따라 상당한 변화가 추가된다.

#### A. 2002년 무역법하의 농민 TAA의 概要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외국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가 농민 TAA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기존 작물을 계속 생산하거나 다른 작물을 대체 경작하는 경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려면 두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첫째, USDA가 특정 작물의 생산자들을 프로그램 수혜 가능 집단으로 인증해 주어야하고, 둘째, 이러한 집단내의 개별 생산자들이 개별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시간의 포도 생산자들이 먼저 집단으로 USDA의 인증을 받은 후에야만 미시간의 개인 포도 생산자들이 현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1) 2002년 무역법에서의 작물그룹 인증

2002년 법에 따르면, 작물그룹의 인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대한 농업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다: (1) 그룹이 경작한 곡물이나 곡물 내 재화의 국가 평균가가 산출되어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의 평균가격이 가장 최근년도부터 지난 오년간의 상응하는 생산물 국가 평균 가격의 80%에 미달하고; (2) 비슷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1)항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

따라서 그룹을 인증하기 위해서 농업장관은 첫째, 생산품의 최근 평균가격이 최근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둘째, 수입물품의 양이 증가 하였으며 이 증가가 가격하락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 2) 2002년 무역법상의 개인 생산자 인증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그룹에 속한 생산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농업이나 어업의 전년도 순소득(net income)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장 최근 년도의 순소득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2002년 무역법은 그룹 인증 이후 9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농어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생산자는 가장 최근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양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고; (B) 생산자는 다른 여타 TAA 프로그램을 통한 현금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을 보증하여야하고; (C) 생산자의 가장 최근 년도의 순수 농업소득 (net farm income; 농무부장관이 결정함)이 TAA지원을 받지 아니한 가장 최근 년도의 순소득보다 적으며; (D) 생산자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를 얻고자 Extension Service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만나서 상담 받은 적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별 생산자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이다. 첫째,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둘째, 다른 TAA를 통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하며, 셋째, 순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하며, 넷째, 기



술지원 등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야한다.

의회는 “순수농업소득(net farm income)”의 결정을 농업부 장관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농무부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순수농업소득을 생산자의 연방 소득신고(federal tax income return)상 보고되고 인정된 소득으로 정의 하였다.<sup>30)</sup>

## B. 농업 TAA 결정의 사법심사

USDA(농무부)의 TAA 결정에 불복하는 생산자는 CIT(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하고 연방항소법원(DC 관할)에 항소할 수 있다. CIT와 연방항소법원은 농업 TAA 관련 2002년 무역법 상의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순소득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CIT가 심사한 24건의 사건 중 14건이 순소득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었고 나머지는 제척기간 등의 절차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sup>31)</sup>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된 두 건은 모두 순소득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sup>32)</sup> 의회가 농무부에 규정 제정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적용한 심사기준은 행정 절차에 통상 적용되는 자의/전단 기준(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이었다.<sup>33)</sup>

*Hacker v. U.S.*, 613 F.3d 1380 (Fed. Cir. 2010)를 예로 살펴보면, 원고인 Hacker일가는 미시간의 포도 농가로서 2001년의 가뭄으로 인한 작물 피해에 대해 2004년에 USDA의 재난구호금 8만달러를 수령하였다. 한편 2004년에 미국의 포도농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저가 포도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 농무부는 미시간의 포도를 농업 TAA의 대상 그룹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Hacker의 개별 지원 신청은 농무부가 거부 하는 데 그 이유는 Hacker의 연방 소득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2004년에 지급받은

---

30)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31) *Hacker v. U.S.*, 613 F.3d 1380, 1382 (Fed Cir. 2010); *Steen v. U.S.*, 468 F.3d 1357 (Fed. Cir. 2006); *Carl v. U.S.*, 839 F.Supp 2d 1351 (Ct. Int'l Trade 2002).

32) *Hacker v. U.S.*, 613 F.3d 1380, 1382 (Fed Cir. 2010); *Steen v. U.S.*, 468 F.3d 1357 (Fed. Cir. 2006).

33)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843-44 (1984).

재해보상금으로 인하여 2004년의 순소득이 2003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른 정부 보조프로그램에서 수혜한 보조금을 순소득에 합산한 농무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TAA 법률은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전반적 감소를 겪은 농가에 대한 현금지원을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Hacker의 경우 순소득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TAA 지원금 신청 거부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C. 경제위기, 그리고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한 농업 TAA의 개정

미국 TAA 프로그램의 재승인의 해였던 2009년의 미국경제는 금융위기를 겪고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었고 이에 2009년 미국 재건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이하 ARRA)의 일부로서 TAA 프로그램들은 재 승인된다.

한편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농민들은 TAA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업 TAA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2009년 ARRA를 통한 농업 TAA의 개혁을 낳게 된다.

2009년 ARRA는 2010년까지 2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다시 2011년 2월까지 1천만 달러가 증액되어 연장 된 후 다시 2014년까지 연장 되었고 추가 연장 입법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2009년 개정은 다음에 서술 된 것처럼 비록 두 단계 인증 절차를 여전히 보전하고는 있으나 농업 TAA 운영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 1) 생산품 그룹 인증 절차에 대한 2009년 ARRA 개정

2009년 ARRA는 그룹 인증에 다음의 입증을 요구 한다: (1) 수입량이 과거 삼년의 평균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것; (2) 생산품이 과거 삼년에 비하여 평균 가격, 생산량, 재화의 가치, 혹은 현금 수입에 있어 15% 이상 감소하였을 것; 그리고 (3) 수입의 증가가 이러한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2002년 무역법과 비교하면 먼저 가격하락의 기준이 완화되었고, 둘째로는 가격하락 없었더라도 생산량의 감소나 가치의 하락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게 한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2) 2009년 ARRA의 개별 생산자 인증 절차의 개선

2009년 ARRA의 개선된 개별 인증 절차에 따르면 각 생산자는 다음을 입증하여야한다: (1) 생산물이 인증에 해당하는 연도에 경작되었거나 최소한 인증 전 삼년이내에 경작 되었으며; (2) 생산량이 줄었거나 (생산자가 받은 가격 혹은 지역 내 평균) 가격이 하락 하였으며; (3) 다른 기타 TAA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

따라서 생산자는 더 이상 순소득의 감소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생산품 인증이 일단 획득되면 개별 생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가 지극히 용이하게 되었다. 미국 감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조정지원 신청을 한 개별 생산자들의 90%에게 조정지원혜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09년 ARRA하에서는 일차 인증의 여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 4. 미국 농업 TAA의 미래와 과제

2009년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미국의 농업 TAA는 발전 단계에 있어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농무부와 법원이 순소득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으나 2009년 ARRA의 결과로 순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2009년 ARRA의 결과로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짐에 따라 농업 TAA 운용과 관련한 사법심사 제도도 별다른 존재 의미가 없게 되기도 하였다.

수혜범위가 넓어지고 요건이 완화된 것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기는 하나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에게 지원이 돌아가고 또한 한정된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고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농업 TAA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만큼 생산품 인증 절차는 간단히 하더라도 개별 인증 시 적어

도 순소득의 일정한 감소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A. TAA 연장 입법 현황

TAA는 그 본질상 한시적인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만 운영되도록 입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의회의 재승인 및 연장 결정이 필요하다. TAA는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정책 결정에서 항상 논의의 중심에 서왔고 특히 대한민국, 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등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및 설득용으로 TAA 연장 입법을 지지하였고 그 결과 2011년 10월 112차 의회는 한미 FTA를 포함한 세 개의 FTA 법안과 함께 TAA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입법의 결과 TAA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고 농업 TAA 프로그램도 연 9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미국 TAA는 오바마 행정부가 EU 등의 諸國을 대상으로 하는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와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2014년 현재 다시 한 번 정치 토론의 전면 에 부상하게 된다.<sup>34)</sup> 이 두 FTA의 성공적인 연내 타결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진흥청법(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새로운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 법은 FTA의 개정 없는 신속한 의회 통과를 가능하게 해주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라먼(Michael Froman)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TPA 통과 노력의 일환으로 TAA의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sup>35)</sup>

현재 TAA 연장 법안은 두 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맥스 바커스(Max Baucus) 상원의원과 수전 컬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발의한 2013년 무역조정지원연장법(Trade Adjustment Extension Act of 2013)안이 첫

---

34) 2013 7 30 TAA TPA .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35)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번째로, 모든 현행 TAA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다.<sup>36)</sup> 또한 2014년 3월에는 하원에 2014년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14)안이 하원의원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 역시 2020년까지의 TAA 연장 내용을 담고 있다.

TAA 연장 입법 근황과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TAA가 미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다.

## B. 2009년의 변화가 농업 TAA 규제 구조에 끼친 영향

2009년 ARRA하에서는 거의 모든 생산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2009년 ARRA가 통과된 후 새로운 요건 구정을 적용하였더니 5개의 생산품 중 4개가 인증을 득하게 되었는데 이 네 가지의 생산품은 2002년 규정으로는 절대 인증될 수 없었던 생산품이었다.<sup>37)</sup>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가격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2009년 이전에는 FAS는 새우나 아스파라거스를 인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생산품들의 가격이 과거 삼년에 비하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이러한 생산품들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FAS의 보고에 의하면 아스파라거스 경작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입 아스파라거스의 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작면적을 줄였던 것이다. 따라서 생산품 인증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충족하기가 2002년의 구도에 비해 용이해졌는데 이는 가격을 유일한 결정요소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준 2009년 변화에 기인한다.

## C. 개별 생산자에 대한 2009년 ARRA의 순소득 요건의 폐지에 대한 비판

2009년 입법의 첫 번째 인증 단계의 요건 완화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36)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3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12-731, *USDA Has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to Farmers and Fishermen, but Steps Are Needed to Better Evaluate Program Effectiveness* 1 (2012).

순소득요건의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없지는 않다<sup>38)</sup> 일단 2009년 입법이후 개별 인증 절차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는 한 건도 없긴 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구도 하에서는 인증이 용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2010에 의회에서 TAA 연장을 논의할 때 2009년의 인증 절차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2002년의 형태로 회귀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었다.<sup>39)</sup> 2002년의 구조로 회귀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측은 2009년 입법은 단기간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정된 것이니만큼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계속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9년 입법은 기존 구조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책이며 현대화 노력의 산물이니만큼 유지되는 채로 갱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의회가 TAA를 연장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 이러한 논쟁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입법의 순소득 요건 폐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부족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생산자, 즉 수입 증가의 여파로 소득감소를 겪은 생산자를 구별해내는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처럼 거의 모든 신청인이 혜택을 수혜하는 것은 TAA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둘째, 순소득 감소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기 축적되어있으므로 향후 순소득 감소 요건을 다시 시행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이 분명하니 만큼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하겠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2년 법의 2단계 인증 구조를 유지하면서 2009년법의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고 생산품인증은 다양한 요건의 제공을 통해 용이하게 하면서 2차 인증에서는 비록 절차 및 신청기간 등은 간소화하면서 순소득감소의 요건은 유지하는 편이 프로그램 豫算의 한계를 고려한 투명성 제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

38)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39)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8 (2013).

## 5. 소결

비록 농업 TAA를 포함한 TAA 프로그램의 미래는 2014년 11월 현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미국의 향후 무역정책 결정에서 항상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농업 TAA는 기존의 TAA 프로그램에서 누락되었던 계층과 상품군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산품의 수입이 증가일로에 있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에게나 상당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록 근로자대상 TAA 보다는 예산규모도 적고 지원대상자도 많지는 않지만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단기적으로나마 감수하여야 하는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현금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농업 관련 TAA를 도입하고자하는 논의를 갖고 입법 준비를 하는 것은 다양한 FTA를 통한 경제적 과실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향후 자유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유대감을 끌어내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증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되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변별력 있는 수혜자격요건의 입법이 필요하다.

1단계 인증과 전체 절차에 관해서는 2009년 ARRA의 간소화된 절차와 인증 요건을 참고하되 2단계 인증에 있어서는 2002년 순수소득 요건을 참고하는 것을 제언해본다.

## V.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방안

### 1. 방안 1

#### (1) 개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체제로 유지하되, ① 위원회의 인적

구성, ② 위원회의 임무, ③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개선하는 방안

## (2) 장 · 단점

장점	단점
<p>현행 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함</p> <p>- 특히 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기관과의 마찰 등을 방지할 수 있음</p>	<p>비상설기구로서 충분한 심의의 기회가 없고, 향후 계속적으로 발효할 FTA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p>

## (3) 세부 개선방안

### 1) 위원회 인적 구성 개선

무역위원회와 같이 정책 주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성원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제외시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무역위원회와 같이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대통령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무역위원회와 같이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간접으로 이해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의 자격에서 배제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으로는 경제학, 농경제학, 법학, 행정, 산업정책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등으로서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참조할 수 있음

### 2) 위원회의 임무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임무를 현재와 같이 농업인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마련, 농업인지원 종합대책 심의 등 정책자체에 대한 심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에서 마련한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인 지원책에 대하여 해당 지원요건 구비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으로 임무 변경이 필요함

현재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임무를 살펴보면 정책심의라는 다소 비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사안의 심의와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의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심의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지거나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할 우려가 있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임무를 농림축산식품에서 마련한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인 지원책에 대하여 해당 지원요건 구비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변경한 후 현재 무역위원회와 같이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조사·분석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참고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임무>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임무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 각 농업 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	

<p>세이프가드조치</p> <p>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p> <p>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p> <p>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p> <p>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p> <p>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p> <p>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p> <p>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p> <p>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p> <p>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p>	<p>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p> <p>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p> <p>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p>
--	---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	--

### 3)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개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위원회 내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절차 역시 전문성, 투명성, 주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분석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정책수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분석의 진행 과정을 정책수혜자들에게 일정부분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를 통해 조사·분석 과정에서 미리 결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투명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를 비상설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규정을 참고할 필요 있음

<참고 : 무역위원회 조사단 구성·운영규정>

<p>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의 소속공무원</li> <li>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li> <li>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li> <li>4.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li> </ol>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5. 그밖에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2. 방안 2

### (1) 개요

무역위원회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게 하고,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조사실을 설치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 내용의 조사·분석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 (2) 장·단점

장점	단점
<p>향후 계속적으로 발효할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p> <p>정책 주관기관과 정책 집행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집행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정책수혜자들과 정책 주관기관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p> <p>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함</p>	<p>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타부처, 입법부 등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정작업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p> <p>- 무역위원회의 경우 근거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제의 운영을 위해서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설립의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p>

### (3) 세부 개선방안

#### 1)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숙제임. 농업인등의 지원시책 중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같이 조사·분석 및 조사·분석의 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판정이 필요한 분야가 적절한 업무 영역이라고 판단됨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을 경제학, 농경제학, 법학, 행정, 산업정책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제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역시 정책 주관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 또는 위촉이 타당할 것임

위원의 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약간 명의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을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 무역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이 있음

위원회의 임무는 현행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임무와 같이 정책 사안에 대한 심의가 아닌 농업인 지원책에 대하여 해당 지원요건 구비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인 가격요건, 수입량 요건, 인과관계 등의 판정과 조정계수 등의 산정 등이 가능할 것임

위원회는 조사실의 상세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기초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요약 보고서 형태의 판정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을 추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 하부기관으로 조사실 설치

독립적으로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조사실을 설치하여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행하고 있는 가격요건, 수입량 요건 등의 조사·분석을 포함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조사실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따라 유사업무를 이행하는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무역위원회의 조사실의 경우 무역구제정책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였으며, 정원은 총 48명임

무역위원회의 경우 정원의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이며 5급의 5인의 범위 안에서 및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조사실의 경우 업무내용의 기술성 및 수개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한 업무의 긴급성 등에 따라 직원의 대부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당장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임기제 공무원, 민간경력자, 민간전문가 활용 등으로 조직 운용에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무역위원회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소속공무원,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조사·분석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인 품목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 품

목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팀의 업무 자체를 품목의 조사·분석의 실시로 상정하고, 보다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만 외부 전문인력이 포함된 조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 방안 3

#### (1) 개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 심의 등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보전직불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및 심의를 무역위원회의 조사실 또는 무역위원회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

#### (2) 장·단점

장점	단점
<p>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기관과의 마찰 등을 방지할 수 있음</p> <p>정책 주관기관과 정책 집행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집행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정책수혜자들과 정책 주관기관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p> <p>무역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p>	<p>업무이관에 따른 반발 및 부작용 발생 우려 있음</p> <p>업무 집행 과정에서 여타 산업과 다른 농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p> <p>농업을 여타 산업과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농업정책 수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p>

### (3) 세부 개선방안

#### 1) 심의업무만 무역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조사·분석 업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그대로 이행하고,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심의업무만 무역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현재 무역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조사실내에 농업 관련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조사·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농업인등 지원센터와 무역위원회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위원회가 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무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농업 관련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함

#### 2) 심의업무와 조사·분석 업무를 모두 무역위원회의 조사실과 무역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조사·분석 업무와 심의 업무 모두 무역위원회 조사실과 무역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은 조사·분석 업무와 심의 업무의 모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사실내 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농업 관련 내용의 심의를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농업 관련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함

## 4. 공통개선방안

### (1) 필요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법규와 비교하여 불 때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근거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방법이 아닌 구체적인 사항들의





<p>5 ( 3 )</p> <p>.</p> <p>,</p> <p>1</p> <p>.</p> <p>1</p> <p>20</p> <p>.</p> <p>19</p>	<p>.</p> <p>19</p> <p>.</p> <p>1 3</p> <p>가</p> <p>가 가</p> <p>가</p> <p>.</p>
<p>8 ( )</p> <p>.</p> <p>,</p>	<p>8 ( )</p> <p>.</p> <p>1</p> <p>r</p>

19

1. :

x

x

가(

」

" 가" ) x

2. :

x

가 x

가

가가

( " )

1

가

가

가

100

90

20

가

,

가

19

가

100

90

1

「

」

19

2)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는 고시의 제정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의 내용일부 및 조사방법절차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를 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 )  
 ( ' ' ) 7 2 , 8 3 ,  
 ( ' ' ) 4 , 5 20  
 ( ' ' ) 19 ( ' ' )  
 ' ) ,  
 .  
 ( 가 가 ) 7 3  
 가 가 가  
 ' 가 ' ,  
 가, . 가 가  
 , .  
 ( ) 8 3  
 .  
 = ( 가 / ) ×  
 1 가  
 가 AMS( )  
 .  
 “ × 가 ”  
 .  
 가  
 가가 ,



---

2.

3.

4.

( ) 가 ,  
가 , 가 가

1

.

1.

2.

( )

3.

4.

2 3

10

.

3

.

( )

,

가

,

가

.

1.

2.

3.

( )

가 ,

가

,

가 가

---

---

1

- 1.
- 2.
- 3.

1

1

1

가 , 가 , 가 가

1

( )

( )

3 31

가

( )

가

( )

---

3)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p>19 ( ) .</p> <p>1</p> <p>,</p> <p>,</p> <p>20 .</p> <p>1. :</p> <p>,</p> <p>가 ,</p> <p>가,</p>	<p>19 ( ) .</p> <p>1 9</p> <p>.</p> <p>.</p> <p>1. , ,</p> <p>10</p> <p>2. 2</p> <p>.</p> <p>.</p> <p>10</p> <p>3. .</p> <p>10</p> <p>4. . .</p>



4) 기타 법률 근거조항의 정비

4 ( ) 「 . 」 3 4 ( " " ) 가 가 6 ( " " ) ( ) 1 2 20 " ) ( " 1. 가 , 가 2. 7 1	4 ( ) 1 7 1 2 20 ( " " ) ( ) 가 ( ) 가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적용방안에 대한 자문의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변호사 홍 관 표

## I. 개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 통상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며,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무역 상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 중 일부 분야 또는 해당 산업 중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등<sup>40)41)42)</sup>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4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種畜業)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농어업인등<sup>43)44)45)46)</sup>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를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제조업이나 일정한 서비스업<sup>47)</sup>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sup>48)</sup>에 대하여 ‘무역조정<sup>49)</sup>지원제도’ 를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법률 모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sup>50)</su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1. 가 . 가 . . . 2. 1

42) 「 2 1 (揚陸地) (糊料)· (油脂) 가 ( ) 가 ( )

43) 「 3 2 가 - 가 ( ) 1. 1 (「 98 ) 2. 120 3. 1 90 4. 「 1 16 1 5. 「 19 1 가 . 1

44) 「 2 5 - ( 「 . ) 3 4 가 5 가 . 가 . (營農組合法人) 가 ( . 가 . ) (農業會社法人)

45) 「 2 13 - ( ) ( )

46) 「 2 5 - ( 「 . ) 3 4 가 5 가 . 가 . (營漁組合法人) ( (漁業會社法人)

47) 「 「 [ 1] ‘ 「 22 1

48) 「 1 「 「 13 ( ) 13 ( ) 2 , 12 ( ) 13 ( )

49) 「 「 2 2 , “ ” ‘

50) 「 「 3 「 「 3

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 는 그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양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상호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 제도의 통일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에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를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함

## II. 검토에서 제외하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닌 사항

### 1.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인’ 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업인’ 에는 직접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이외에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 2.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

또한 어업인등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도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 Ⅲ.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방안 검토

####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유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크게 보면,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③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 방식, 절차, 효과 등을 선별적으로 차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차이점

위와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양자 모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국내 지원대책 중 직접피해보전대책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양 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 가. ‘품목별’ 지원방식 vs ‘기업별’ 지원방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 ‘품목별’ 지원방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일정한 가격하락기준과 수입량증가기준을 요

건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고시하면, 해당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은 개별적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농업인등에게 품목별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에 의해 계산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됨

## (2) 무역조정지원제도 - ‘기업별’ 지원방식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개별 기업이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일정한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함을 입증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무역조정계획)과 함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의 융자지원과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음

## (3)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제도가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가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농축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임산물이 품목별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갖고 거래되며 국내 시장에서의 농·축·임산물의 품목별 거래에 관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점과 함께 신청 농업인들이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소득 감소나 피해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별지원방식에 비하여 신청 농업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농·축·임산물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예를 들어 이어폰)이라고 해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시장에서도 상호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갖고 거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기 어렵고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이 되기 어려움

#### (4) ‘품목별’ 지원방식과 지원대상품목 선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들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되어야 함

어떤 품목이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됨에 있어서는 대상품목의 ① ‘해당 연도 평균가격’ 이 ‘기준가격’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해당 연도 총수입량’ 이 ‘기준총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③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이 ‘기준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sup>51)52)</sup>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51) 「가 ( 3 1 ) 5. :  
5 ( / + - )  
52) 2011. 8. 24. 「 90  
, 10%  
1.15( 1.25), 10% ~ 30%  
1.10( 1.10), 30%  
1.05( 1.05)

여기서 평균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은 모두 시장에서 통계에 의하여 조사되거나 산출되는 객관적인 지표임

실제로 농산물의 평균가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에 따른 해당 품목의 연간 거래금액과 연간 거래물량에 의하여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산출되고, 농산물의 총수입량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품목별 수입량으로 산출됨<sup>53)</sup>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 중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에 관하여는 단순히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기준수입량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시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기준수입량으로 정하고 있어 가중된 기준<sup>54)</sup>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원대상품목 선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품목별’ 지원방식과 개별 농업인의 소득변화 상황이나 피해 상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등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품목이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됨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전체적인 상황(평균가격, 수입량)이 기준이 될 뿐, 개별 농업인의 구체적인 소득변화 상황 또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

53) 「

가 ( 3 1 )  
54) 1.15, 1.10, 1.05 1 ,



## (6) ‘품목별’ 지원방식의 한계와 ‘농업인등 지위위원회’의 역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피해 또는 수익감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하는 품목이 시장 전체적으로 평균가격 및 수입량의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농업인등 지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평균가격 및 수입량 등의 기준이 시장에서의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되는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농업인등 지위위원회’가 여기에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여 지원대상품목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따라서 ‘농업인등 지위위원회’에 농업인대표 내지 농업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것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하겠음

## (7) ‘기업별’ 지원방식과 지원기업 지정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어떤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무역피해에 관한 요건과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무역피해에 관한 요건은 ①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을 것이 확실할 것<sup>55)</sup>, ②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

55) 「

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의 증가가 해당 기업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sup>56)</sup>이고,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요건은 ③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임<sup>7)</sup>

무역피해에 관한 요건 심의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sup>8)</sup>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요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함<sup>9)</sup>

절차적으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및 무역조정계획서와 함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하여 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무역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기간<sup>60)</sup> 동안 ②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품목(상품 또는 서비스)과 같은 종류의 품목<sup>61)</sup>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sup>62)</sup>에 대하여 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sup>63)</sup>하고, ④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일정 폭 이상 감소하

56) 「  
57) 「  
58) 「  
59) 「  
60) 「  
61) 「  
62) 「

는 등 신청기업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sup>64)</sup> 입을 것이 확실하며<sup>65)</sup>, 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신청기업의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함<sup>66)</sup>

여기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품목과 같은 종류의 품목 또는 직접 경쟁 품목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량,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산금액 또는 생산량’은 시장에서의 통계에 의하여 조사되거나 산출되는 객관적 지표이나, ‘신청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수요자·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납품가액 등’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 경영상황에 관한 것으로 시장에서의 통계만으로 조사되거나 산출될 수 없고,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 여부가 조사·확인되어야 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를 담당하는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피해 최소화·극복을 위한 계획 제출 여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63) 가( 2012-1 ) 9 1 가( 가 )  
 가( 가 )  
 64) 가가 가( 가 )  
 가( 5 2 1 가 , 2  
 6 가 100 10 , ,가  
 , 가  
 65) 가( 5 2 1 가 , ,가 ,  
 1 가  
 100 10 가  
 66) 가( 2012-1 ) 12 1 ,  
 가가 가 가  
 , 가  
 , 가  
 , 가가 , 2  
 가 가

## (8) ‘기업별 지원방식’ 과 개별 기업의 피해 상황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 접지불금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대상품목이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절차는 필요 없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이 되었든 우선 신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같은 종류의 품목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신청기업의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함

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전체적인 상황(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량, 국내 기업의 생산금액 또는 생산량)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고려의 대상은 개별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임

## (9) ‘기업별 지원방식’ 의 한계와 ‘무역위원회’ 의 역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신청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량에 비추어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기업은 자신이 입었거나 입을 무역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신청기업은 무역피해의 내용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영업이익, 가동률, 수요자·거래처에 대한 납품가액과 같이 고유의 영업상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제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무역피해가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시에 미리 확신하기 어려움

그리고 신청기업의 무역피해 여부를 심의하는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판정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 산하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조직이 필요한데,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사무처 조직으로는 무역조사실과 4개의 팀을 두고 있으며, 무역위원회에서 무역피해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무역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무역조사실장<sup>7)</sup>(실제로는 무역조사실 소속 조사관<sup>68)</sup>)이 작성하여 무역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sup>69)</sup>’에 상응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sup>70)</sup>’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재하지만, 무역조정지원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므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심의는 사무처 조직이 있는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나. 피해 최소화·극복을 위한 계획 제출 요부

지원 대상을 ‘품목별’로 선정하는지 또는 ‘기업별’로 지정하는지와 함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이의 또 다른 주

67) 「가 ( 2012-1 ) 28 1

68) 「 5 , 4 , 「 」 , 「 」 6 13 가 , , 3

69) 「 」 19 4 , , , , , 가

70) 「 」 14 1 , 12 3 , 가 ,

요한 차이는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개별 농업인이 지급신청을 할 때에 신청 농업인에게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상의 주요 기재 사항은 신청(생산)품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m<sup>2</sup>, 마리) 정도에 불과함

반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신청기업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히 예상될 것과 별개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할 때에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무역조정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임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2호) [서식 3] ‘무역조정계획서’를 통해 무역조정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조정계획은 기업현황(기업개황, 재무, 매출 및 생산 현황 등)을 기초로 하여 ① 무역조정계획에 따른 생산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요(제품명, 제품용도 및 특성, 품질경쟁력, 개발·생산 계획, 기대효과 등), ② 영업계획(시장성, 판매계획 등), ③ 설비투자계획, ④ 자금 조달계획(총소요금액, 조달계획 등), ⑤ 경영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⑥ 재무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조정계획을 진단하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역조정계획, 기업외부환경분석, 기업내부역량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결과에 반영하여야 함<sup>71)</sup>

이와 같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제출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출된 무역조정계획의 경쟁력 확보 적

71) 「

」(

2012-172 ) 5 2

합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기업에게 지원에 상응하는 자구 의지 및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계획, 설비투자 계획, 자금 조달계획, 경영기술상담지원 추진계획, 재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계획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임에도 무역조정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지정신청을 포기하거나 무역조정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sup>72)</sup>에서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 대행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sup>73)</sup>

또한 무역조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신청기업의 자구 의지 및 노력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무역조정계획의 실제로 이행될 것이 요구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취소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①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여야 하고<sup>74)</sup>, ②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sup>75)</sup>,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이에

72) [http://www.sbc.or.kr/sbc/sbc\\_info/info/system.jsp](http://www.sbc.or.kr/sbc/sbc_info/info/system.jsp)

7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 대행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7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7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응하여 보고하여야 하고<sup>76)</sup>, ④ 3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면 안 되며<sup>77)</sup>, ⑤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sup>78)</sup>,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보제공 지원, 용자지원 및 상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sup>79)</sup>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출입·검사 권한이 있음<sup>80)</sup>

#### 다. 피해보전금의 직접지불 vs. 정보제공·용자·상담 지원

지원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신청 농업인 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직접 지급하는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보전을 위한 금원의 직접지불 방식이 아니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정보제공 지원, 용자지원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농업등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간단하게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의 산식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sup>81)</sup>×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sup>82)</sup>×(해

76) 「  
77) 「  
78) 「  
79) 「  
80) 「  
81) 「

( 3 2 ) 1. ( [ 2 ] ) 가.  
(標準栽植株數)

82) 「  
: 5 ( 3 2 ) 1. ( [ 2 ] ) . 3  
1) 「 「 17 22  
( “ ” )



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90/100-해당 연도의 평균가격)×90/100×(지급가능 보조액÷지급신청  
 총액)×수입기여도<sup>83)</sup>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이 중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지급가능 보조액÷지급신청 총액)×수입기여  
 도}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8조 제3항에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대외적으로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조정계수를 고려하면, 지급가능 보조액 대비 지급신청 총액이 증가하면 피  
 해보전직접지불금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의 액수가 지급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농업인등이 입은 피  
 해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 중 ‘정보제공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  
 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  
 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무역  
 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2호)에서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사무  
 의 하나로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항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는 사무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며,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서도 무역조정지원시책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정보제공 지원에 관하여는 기술하지 않고

2) ( “ ” ) , 3)  
 1) 2) 가 .  
 20 가

83) 가가 (EDM) 가

있어서 정보제공 지원의 정확한 지원 내용은 명확하지 않음

무역조정지원제도 중 ‘용자지원’은 정부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①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 자금, ②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 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③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④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⑤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⑥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sup>84)</sup>을 용자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용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sup>85)</sup>에 용자지원신청서를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최근 3년간의 재무재표, 용자금의 사용계획서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sup>86)</sup>,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용자지원의 타당성 평가 및 용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지원여부 및 금액,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함<sup>87)</sup>

구체적으로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2014년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용자지원 규모는 95억원이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를 차감한 변동금리<sup>88)89)</sup>로, 시설자금<sup>90)</sup>은 업체당 연간 45억원을 한도로 하여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의 대출기간 동안 그리고 운전자금<sup>91)</sup>은 업체당 연간 5억원(10억 이

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8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8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항  
 8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항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  
 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9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

상 시설투자기업은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의 대출기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융자지원이 이루어짐

무역조정지원제도 중 ‘상담(컨설팅)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해당 기업이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상담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sup>92)</sup>에 상담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sup>93)</sup>,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100 이내에서 지원됨

구체적으로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2014년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지원 규모는 4.75억원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회로부터 상담지원결정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체당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의 범위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상담지원 분야는 경영 및 기술의 전분야에 걸쳐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에 관한 상담이 모두 지원 내역에 해당됨

#### 라. 주요 차이점 종합 정리

	○ ‘ ’	○ ‘ ’
	○	○ ‘ ’

92) 「

」 8 1

93) 「

」 3

	○ ·	○ ·
	○	○ 가
·	○ ·	○ ( ) ·
	○ 가	○ ·
	○ ' 가	○ ' , ( ) ○ ' ,
·	○ ·	○  ○

		<p>○ ‘ ,</p> <p>○</p>
	<p>○ : ( )</p> <p>○ 가 ,</p> <p>○ . ,</p> <p>○</p> <p>○ ( , , )</p> <p>○ .</p>	<p>○ : ( . ) ,</p> <p>○ ,</p> <p>○</p> <p>○ ( , , )</p>
	<p>○</p>	<p>○</p> <p>○ . . .</p> <p>○</p> <p>○ . . .</p>

###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농업인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지정신청서에는 해당 농업인이 스스로 작성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및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다음, 일정 기준 이상의 무역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조정지원농업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된 무역조정지원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전을 위한 금원 지급 없이 정보제공, 용자지원, 상담지원을 통해 스스로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임

이 경우 지정신청의 대상은 경영 중심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개별 농업인이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개별 농업경영체가 주장하는 무역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무역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와 조사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개별 농업경영체로부터 무역조정지원농업경영체 지정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주면서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이 있는 기구(예를 들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체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를 일원화하여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무역피해를 주장·입증하고 무역조정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종래 피해

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들의 반발이 우려되며, 지원 요건이 가중되면서 직접 금원 지급이 지원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 일반에 인식되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2014년 11월 말 현재 약 150만개 정도에 이르는 농업경영체가 무역조정지원농업경영체 지정신청에 나설 경우에 이를 접수받아 조사·처리할 행정조직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단점이 많아 장기 검토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도입·시행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이 방안은 현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할 때에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이나 지원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해당 사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하겠음

앞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차이점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현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지 못한 품목을 생산하면서 피해를 입은 개별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②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한 개별 농업인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외에 정보 제공, 용자지원, 상담지원을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일정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주장·입증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별도로 정보 제

공 지원, 용자지원,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첫 번째로는, 현재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혹은 추가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또는 농업인)를 대상으로 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사하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함을 주장·입증하면서 무역조정지원농업경영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무역피해가 인정되면 그 피해를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제공지원 용자지원, 상담지원의 방식을 통해 해당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무역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이러한 방안은 현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가 통계와 같은 시장에서의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현행 지원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로 보호되지 않던 영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명분이나 수용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장하고 심사를 받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별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임

사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러한 점을 아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sup>94)</sup>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sup>95)</sup>을 두고 있음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등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지원사업이 마련된 이후에 정부가 제시한 별도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에 있어 반드시 특정 품목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앞서 언급한 이른바 ‘무역조정지원농업경영체 지정 및 지원 방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음

실제로 2012년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발간한 『농·어업인을 위한 FTA국내보완대책 요약』 자료를 통해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130개 대책들은 살펴보면, 모두 일반 대책이고 특별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개별 농업인등을 위한 지원으로 마련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sup>96)</sup>

9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 2, 3, 4, 5, 6, 7, 8, 9항

9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 2, 3, 4, 5, 6, 7, 8, 9항 (2011. 7. 21. 제정, 2011. 10. 22. 개정)

9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 2, 3, 4항 (2011. 7. 21. 제정, 2011. 10. 22. 개정)



정도에 이르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무역피해를 조사·판정하고 무역조정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확인할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조정계획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거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안의 취지에 비추어 무역피해 주장을 조사·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현재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혹은 추가적으로 ‘무역조정지원농업경영체 지정 및 지원 방안’을 도입하되 그 대상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경영체와 함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농업경영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 방안에 따를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직접지불금 외에 융자지원이나 상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적·구체적인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5.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선별적으로 차용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선별적으로 차용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이 방안은 현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 방식, 절차 또는 효과 등을 선별적으로 차용하

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 가. 농업인등이 구체적인 무역피해를 주장·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와 같이 지급신청서와 함께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임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농업인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인데, 무역피해사실입증서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출될 수 있다면 농업인등에게 지급해주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음<sup>97)</sup>

#### 나. 구체적인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중 개별 농업인등에게 구체적·개별적인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정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시에 별도로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하는 방안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요건을 가중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등에게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방안임

---

97)

####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관련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대한 심의와 품목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에 대한 심의를 현재는 정책위원회 성격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의 ‘무역조정지원위원회’와 같이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심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예를 들어 ‘농업인등 피해보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무급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현재보다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임

#### 라. 용자지원 및 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농업인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용자지원이나 상담지원도 제공하는 방안이고, 해당 농업인등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됨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농업인등에게만 용자지원·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현재보다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음

별첨 1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각종 서식

# 1. 무역피해사실입증서

## I. 기업개황

### 기업 개요

(     년 기준)

업종 (사업부문)	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목	무역피해 품목여부	매출액 (백만원)	매출구성비 (%)	수출액 (백만원)

### 회사연혁 (별지사용 가능)

연월일	주요내용 (해당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요약 기재)

\*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여부 기재

### 관계(관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소유지분

### 주요 경영진 현황

(     년     월     일 현재)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최종학력	주요경력

### 주주상황

(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금액 (백만원)	비율 (%)

\*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일 것. (단, 5%이하의 주주들은 기타주주로 합쳐서 기재)

## II. 무역피해에 관한 사항

### < 작성시 유의사항 >

무역피해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동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피해예상에 대한 정황자료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심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조사신청물품(무역피해품목)에 관한 사항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인지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직접적 경쟁) 상품(서비스)인지 구분하여 아래 사항들을 비교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 외에 추가로 제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이란 상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가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음)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의 목적수단, 서비스의 품질, 수요자의 범위, 규제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 경쟁상품(서비스)이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품목 개요 : 품목명, 제조공정(제조방법), 규격, 모델 등

나.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서비스)인지에 대한 항목별 비교

(상품)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상품) 품질

(상품) 용도

(상품) 유통경로

(상품) 관세품목분류번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수단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 규제법령

(상품) 기능 (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공통) 소비자의 평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공통) 상업적 용도의 대체사용 가능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 2. 수입증가 사실에 대한 증빙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증가 사실을 아래의 표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10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입니다.

수입물품별 수출입통계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s/jsp/Index.jsp](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 좌측의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의 품목별 수출입통계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된 자료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 업종의 구체적 통계가 없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국내 상업적 주재 포함)으로부터의 공급이 증가하였다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같은 종류의 또는 직접적 경쟁 업종의 한국내 지점 설치, 투자 증대 등)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피해발생기간이라 함은 신청일 이전 2년내에 있는 6개월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피해발생기간으로 선정한 기간이며, 비교동일기간이라 함은 직전년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 기업이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직전년도 동일기간은 직전년도 1월에서 6월임)



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

수입국가명 :

(단위: 천\$, 천kg, %)

구 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 . . . ~ . . . )			피해발생기간동안의 수입 ( . . . ~ . . . )			증감률 ((B-A)/A)
	금 액	중 량	수 량(A)	금 액	중 량	수 량(B)	
품목번호							

- \* 피해기간동안(6개월)의 수입과 직전년도 동일기간동안의 수입의 증감을 비교합니다.
- \*\* 물품에 따라 수량으로 수입물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량단위로 증감을 계산합니다.

(단위: 천kg, 천\$, %)

구 분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입물량								
수입금액								

\* 수입물량 및 금액의 최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반기별로 기재합니다.

나. 수입의 상대적 증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내생산에 비하여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최근 3년간의 국내생산량과 수입물량의 증감추세를 반기별로 기재합니다.

국내 생산량 자료는 사업자 단체 또는 관련협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 등 입수 가능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국의 수출증대 가능성, 유희 생산능력,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내 지점설치 계획, 투자증대 계획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kg, %)

구 분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 내 생산량								
수입물량								

\* 국내 생산량의 경우, 반기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제출)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 또는 생산 증감률이 20/100 이상 감소되거나,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 증감률 20/100이상 감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해발생기간이라 함은 6개월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피해발생기간으로 선정한 기간이며 비교동일기간이라 함은 직전 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경우 피해발생기간의 자료는 6개월의 피해 예상기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간의 예상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생산량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두 20/10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은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출, 생산, 영업이익, 고용 등은 무역피해분야와 기타 분야로 구분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가. 매출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천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A) ( .. ~ .. )	피해발생(예상)기간(B) (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 분야				
	소계(가)				
	기타분야				
	소계(나)				
	총계(가+나)				

#### 나. 생산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A) ( .. ~ .. )	피해발생(예상)기간(B) (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 분야				
	소계(가)				
	기타분야				
	소계(나)				
	총계(가+나)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아래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은 피해(예상)기업의 피해발생(예상)기간의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 증감률 20/100이상 감소'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입니다.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피해예상치를 기재함과 동시에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주요 거래처의 변경으로 인한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는 가동률, 재고를 기재하는 대신에 서비스 거래(영업)의 수, 시장점유율 등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천원, %)

구 분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 ( . . . ~ . . )		피해발생(예상)기간 ( . . . ~ . . )		증감률 ((B-A)/A)
		영업이익(A)	영업이익률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	
무역피해분야						
기타분야						
합 계						

\* 영업이익 계산시 판관비(판매활동과 기본적인 본사활동(광고,홍보,전사관리,연구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는 합리적 기준(예 : 매출액 기준 배분)으로 배분함

**라. 가동률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 %)

구 분	구분	기간	비교동일기간 월 평균		피해발생(예상)기간동안 월 평균	
			( . . . ~ . . )	증감률	( . . . ~ . . )	증감률
무역 피해 분야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기타 분야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계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다. 고용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명, %)

구 분		비교동일기간 평균상시 근로자수(A) ( .. ~ ..)	피해발생(예상)기간 평균상시 근로자수(B) ( .. ~ ..)	증감률 ((B-A)/A)
무역 피해 분야	생산직			
	일반직			
	계			
기타 분야	생산직			
	일반직			
	계			
합 계	생산직			
	일반직			
	계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위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위 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바. 재고에 관한 사항 (피해예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예상치를 기재)  
(단위: , %)

구 분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 월평균 재고량(A) ( .. ~ ..)	피해발생(예상)기간 월평균 재고량(B)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분야				
기타분야				
합 계				

4. 수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제출)

가. 판매가격 현황

수입상품 또는 서비스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납품 단가차이를 비교하고, 최근 3년간의 가격추세를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수입물품의 납품단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또는 피해 예상기업의 경우에는 수입물품 납품단가에는 해당 물품의 동 기간 평균수입가격(CIF)과 재판매가격을 기재합니다.

\* 해당물품 평균수입가격(CIF) = 해당기간의 수입금액 / 수입물량

\* 해당물품 재판매가격 = 해당물품 수입가격(CIF)×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윤)

(단위: 천원, %)

주요 거래처			비교동일기간 납품단가비교 ( .. ~ .. )			피해(예상)기간 납품단가비교 ( .. ~ .. )			대체 품목 수입국
거래처명	대표자	연락처	자사납품 단가(A)	수입물품 납품단가(B)	납품단가 차이율 (A/B)	자사납품 단가(A')	수입물품 납품단가(B')	납품단가 차이율 (A'/B')	

(단위: 천원, 천\$, %)

구 분	00년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자사 평균 납품 단가											
수입물품 평균 납품 단가											
수입물품 평균수입 가격(CIF)											
수입물품 재판매가격											

\* 수입물품의 평균 납품단가 가격파악이 힘든 경우 수입물품의 평균 수입가격(CIF)과 재판매가격을 기재합니다.

\*\* 반기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의 경영지표 현황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가동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거래(영업)의 수), 고용, 재고(서비스의 경우 시장점유율) 등 경영지표들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액부터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만, 생산량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재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두 20/10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역피해분야

(단위: 천원, %, 명)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영업이익 (e=c-d)							
생산능력 (a)							
생산량 (b)							
가동률(b/a)							
고용인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재 고							

기업 전체

(단위: 천원, %, 명)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영업이익 (e=c-d)							
생산능력 (a)							
생산량 (b)							
가동률(b/a)							
고용인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재 고							

#### 다.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품현황

수입물품의 증가로 인하여 자사의 거래처가 자사납품품목이 아닌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및 납품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납품물량'은 '서비스 제공횟수'로, '납품금액'은 '서비스 판매액'으로 변경 기재하며,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계약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합니다.

(단위: 개, 천원, %)

주요 거래처			비교동일기간 납품규모 (... ~ ...)		피해(예상)기간 납품규모 (... ~ ...)			대체 품목 수입국
			납품 수량	납품 금액	납품 수량	증감률	납품 금액	
거래처명	대표자	연락처						

#### 라. 수입외의 요인이 기업 매출 및 생산에 미친 영향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등이 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 무역조정계획서

### I. 기업현황

1. 기업개황(회사의 목적, 회사의 연혁, 관계회사, 경영진 및 주주현황 등)은 <별지 제1호2서식>의 '무담역피해사실입증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2.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2서식>의 '무역피해사실입증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3. 매출 및 생산

#### 가. 매출현황 및 전망

구 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T-3년	T-2년	T-1년	T년		T+1년
				( )월 현재	연간	
내 수						
수출액						
합 계						
- 20XX년 매출액 대비 주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 (품목명:      )						

\* T : 기준년도

- 매출세부내용(매출처는 거래비중 기준으로 50%이상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tel)	거래품목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비중(%)	거래기간	결제조건(규모)
매출처	고정 거래처			개월	예)외상매출채권(1억원)
				개월	
	기타			개월	
매입처	고정 거래처			개월	
				개월	
	기타			개월	



주1) 확보된 매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별지 작성 첨부  
 주2) 매출처별 결제조건 중 외상매출채권 및 받을어음 규모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재

나. 기술개발실적(최근 3년 이내 개발실적만 중요도 순서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 공동개발,기타)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현황, 참여인원 등)
	~			
	~			
	~			
	~			

다. 규격표시 획득현황(최근 3년 이내 획득규격만 중요도 순서로 기재)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라.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최근 3년 이내 재산권만 중요도 순서로 기재)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관리권자

마. 주요시설(필요시 별지작성)

시 설 명	수 량	장부가격(백만원)	비 고

바.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p>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p>	
<p>제품생산 공정도</p>	<p>*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p>
<p>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p>	
<p>기술(서비스) 품질경쟁력  - 대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p>	
<p>수요전망 및 판매계획</p>	

## II. 무역조정계획

### 1. 계획의 개요

무역피해의 개요 및 무역조정계획 추진의 목적			
시설 설치장소		이행 기간	200 ~ 200
사업 추진 계획 요약	기술(서비스) 수급계획		
	인력수급계획		
	설비추진계획		
	판로확보계획		

주) 무역조정계획 이행기간 내 기존 기술과의 연관성, 기존 인력·설비·거래처 활용여부 또는 신규 채용·투자계획·거래처확보계획 등을 기술

### 2. 세부추진계획

가. 무역조정계획상의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기존 또는 신규

제품명 (상품 또는 서비스명)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기술(서비스) 품질경쟁력 - 대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상품(서비스) 개발계획 및 생산/증산계획	
기 대 효 과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 자원활용 등)	

주)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핵심기술(서비스)을 기술

나. 계획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계획

○ 시장성

판매형태		주문판매 %	시장판매 %	임가공 %	내수 %	수출 %		
경쟁 현 황	제품명 (상품및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생산 업체 수	주요기업체명 1순위 2순위		귀사의 동업계 지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경쟁 상태

주)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동업계 지위는 상·중·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통·독점으로 기재

○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품 목 명 (상품 및 서비스)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산능력 (수량·금액)	판매처 (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합 계										

\* T :

- 주1)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년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 주2) 수출금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준환율을 기재함( 1\$ :            원)
- 주3) 주요품목(상품 및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다. 설비투자계획(필요시 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설치시기

라. 자금 조달계획

○ 총소요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설 자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 타		
운전 자금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등		
	기 타		
합 계		-	

○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소요금액	시설		
	운전		
조달 계획	자체자금	시설	
		운전	
	중진공 차입금	시설	
		운전	
	은행자금등 기타	시설	
		운전	

마. 경영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주) 상담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바. 재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전년도 (T-1년)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대 차 대 조 표	총 자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손 익 계 산 서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 T :

Ⅲ. 약도 첨부

■ 주변지리정보, 대중교통수단, 주차가능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

담당자 휴대폰 : _____           
---

## 별첨 2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인과관계 조사 결과<sup>98)</sup>

### 1. 조

- 국산 조와 수입 조의 가격 차이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용도가 거의 동일하고 수입 조가 국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조 수입량 증가가 국내 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1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FTA 이행이 국산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 또한 전체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소량만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2. 수수

- 국산 수수와 수입산 수수의 가격 차이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용도가 거의 동일하고 수입산 수수가 국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상당히 큰 상황에서 수수 수입량 증가가 국내 수수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최근 몇 년간 국산 수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수입업체로 하여금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수입량 증가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큼. 이는 결국 수입산 재고 증가와 국산 과잉생산이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졌음을 뜻함

### 3. 감자

- 수입산 감자 가운데 조제저장처리/냉동(후렌치후라이용) 감자와 종자용

98) , 2014 FTA

외 기타(칩용) 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70%, 약 23%로 대부분을 차지

- 그 중 칩용 감자 수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후렌치후라이용 감자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14.4% 증가
- 국내에서 수요로 하는 후렌치후라이용 감자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후렌치후라이용 감자시장은 국산 감자시장과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칩용 감자는 12월부터 다음 해 5월 수입을 통해 조달되고, 6월부터 11월 국산 칩용 감자가 출하되면서 수입산을 대체함

- 국산 감자 비출하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4월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산이 저렴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기간에는 TRQ물량 안에서 3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산 감자의 경쟁력을 높힘
- 그러나 국산 감자의 출하기인 6월부터 11월에 높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에도 불구하고 칩용 감자가 수입되고 있어 국산 감자와의 경합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

○ 이미 다양한 국산 칩용 감자 품종이 개발되었고, 현재도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 품종의 저장성, 파종시기, 생육기간 등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국산 칩용 감자와 수입산의 대체관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주로 식탁용으로 소비되던 수미 품종 감자의 용도가 칩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자칩시장에서 수미칩과 칩 전용 감자칩과도 어느 정도 경쟁함으로써 상호간의 대체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 4. 고구마

○ 고구마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고구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측면의 원인으로 인한 고구마가격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고구마 총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상황에서 수입이 국내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수입량 증가가 가격 변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국내 고구마 총공급량 가운데 전체 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4%, 0.1%에 불과함

## 별첨 3 미국 TAA 관련 자료

### 1. 미국 농업 TAA의 실제 운영 事例

美 농무부 FSA의 농민 TAA 안내자료(Program Fact Sheets for TAA for Farmers)의 例: 2011년 4월의 공지

[http://www.fsa.usda.gov/FSA/newsReleases?area=newsroom&subject=landi ng&topic=pfs&newstype=prfactsheet&type=detail&item=pf\\_20110422\\_in sup\\_en\\_trade.html](http://www.fsa.usda.gov/FSA/newsReleases?area=newsroom&subject=landi ng&topic=pfs&newstype=prfactsheet&type=detail&item=pf_20110422_in sup_en_trade.htm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TAA for Farmers)

FAS(해외농업서비스: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프로그램 운영자가 輸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결정한 農水産物의 일차생산자들은 농민 TAA 프로그램의 현금지원(cash payments)과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농민 TAA 지원 受惠 資格 획득을 위해 지역 FSA 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지원은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일차 기술 지원은 2시간 혹은 4시간 단위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진행되며, TAA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산자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생산품의 시장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대체 생산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타당성은 있는가에 대한 소개와 수입과의 경쟁에 대처하는 데 있어 조력과 조언을 받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생산자는 집중기술지원(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중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생산과 판매, 금융 및 경영 전략 그리고 대체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複數의 워크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술훈련을 통해 생산자는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일차 사업계획 및 장기 사업 조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AS가 이러한 일차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생산자는 일차계획 실현할 수 있도록 혹은 장기 조정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4,000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장기 사업조정 계획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 助力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생산자들은 최대 \$8,000까지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TAA의 運營**

농민 TAA는 FAS가 운영하며 FSA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자격을 갖춘 생산자들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네소타주립대의 농장 재정 경영 센터에서 지역 기술 트레이닝의 일정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대부분이 지역의 國立農食品院(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의 전문가가 제공할 것이며 이 전문가가 추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현금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추천할 것입니다.

2009년 미국경제 부흥과 투자법은 1974년 무역법을 개정한 2002년 무역법 (법률 107-210호), C章하에서 설치된 농민 TAA를 再 認定하고 수정하였다.

### **생산품 인증**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생산자들, 혹은 생산자 단체는 FAS-930 인증신청서를 워싱턴 DC 所在의 FAS에 제출하여 생산품이 농민 TAA의 수혜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S-930 양식은 <http://forms.sc.egov.usda.gov/eforms/mainservlet>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품(commodity) 그룹인정을 받으려면, FAS 주무관이 당해 농업 상품의 수입증가가 과거 삼년의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평균가격, 생산량, 혹은 현금수입의 15%이상의 하락에 현저하게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야합니다.

또한 당해 상품은 미합중국 균형관세율표(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1, 3, 4, 5, 6, 7, 8, 10, 12, 14, 23, 24, 41,51, 혹은 52章에서 정의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 스케줄표는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FAS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신청내용을  
공시하고 심사를 개시합니다. 관보의 공시는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재화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품 관련 정보, 심사대상 년도 및 비교와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신청서가 포괄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공시는 다른 생산자들이나 기타 관련 상품의 생산자들에게 신청서에  
합류하거나 혹은 신청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 후 40일(달력기준) 이내에 FAS는 심사를 마치고 인증 여부와 인증이  
되 었을 경우 인증이 미치는 년도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관보에 공시됩니다.

### 생산자 인증 요건

신청인 제출서류: 인증이 부여된 생산품의 생산자는 서면신청서  
(FSA-229-01)을 생산품 인증의 관보 공시이후 90일 이내에 지역의 FAS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개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신청서의 양식은  
<http://forms.sc.egov.usda.gov/eforms/mainservlet>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산 및 가격 요건: 기술지원 및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생산품 인증이 포함하는 년도 및 그  
년도로부터 과거 삼년간 최소 일년 이상 산품을 생산했을 것; 그리고 (2)  
다음 세 가지의 선택사항 중 하나를 충족했다는 확약을 하거나 충족했다는  
서면 입증을 할 것. 옵션 1: 인증 년도의 생산량이 인증 년도 바로 전년의  
생산량 보다 감소하였는지? 옵션 2: 신청인 혹은 같은 주나 같은 지역의  
인증된 상품의 생산자들이 생산된 상품에 대해 신청기간내의 년도에 과거  
삼년간 받은 평균 가격에 비해 감소된 가격을 받았는가? 옵션 3: 신청  
상품에 대한 농무부의 주별 혹은 지역별 공시 가격이 신청일 현재 과거  
삼년간 농무부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보다 낮은가? 옵션 선택 칸에 체크를  
한 신청인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書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총수익(Adjusted Gross Income: AGI) 및 지원금 한도 요건: 기술 지원 및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조정 총수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08년 상품의 예를 들면 조정총수익 한도는 250만 달러이며 이 한도는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 적용됩니다. 2009년 그리고 그 이후 곡물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년도 과거 삼년간의 평균 非農業 조정총수익(adjusted nonfarm income)이 오십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TAAF 곡물의 경우 AGI는 2005, 2006, 2007년의 평균값입니다. 이러한 조정총수익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을 가진 신청인은 농업 TAA하의 어떠한 지원도 수혜할 자격이 없습니다. TAA하의 농업 사업계획 지원금은 反循環 평균 곡물가 선택 지불금(Countercyclical and the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ayments: \$65,000)에 적용되는 제한 산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생산자가 신청 년도의 TAA 기간 중 이러한 한도를 이미 초과하였다면 사업계획지원금 및 훈련 관련 출장비용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TAA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증된 생산품 관련 혜택을 이미 수혜한 신청인은 다른 농업 TAA의 지원프로그램이나 기업 TAA 혹은 근로자 TA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 인증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12,000입니다. 출장 관련 실비정산 액은 이 \$12,0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수령한 기타 TAA 관련 지원금은 이러한 새로운 혜택에 대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술지원 및 사업계획 요건: 농업 TAA 기본 자격을 획득한 신청자들은 네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1) 오리엔테이션; (2) 집중 기술지원; (3) 초기 사업계획; (4) 장기 사업 조정 계획 훈련. 오리엔테이션 세션 이수는 기술 지원, 장기 사업 조정 계획 그리고 현금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선행 요건입니다. 신청서가 허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들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방 여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은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수 관련 여행 경비를 실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외 과정의 여행 경비는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인증 생산품의 생산자들은 수익성을 증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토픽을 다룰 일련의 워크숍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참가자들이 초기 사업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워크숍의 참가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초기 사업계획을 작성한 참가자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장기사업계획을 짜는데 쓸 수 있도록 \$4,000 한도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FSA의 초기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참가자들은 장기 사업 조정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조력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장기 사업 조정 계획이 승인이 되면 생산자는 장기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8,000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생산자는 신청서 승인 날짜 이후 36개월 이내에 계획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요건은 집중 기술 지원 세션에서 설명 됩니다.

#### **프로그램 재정 지원 한도**

농무부(USDA)는 일차 훈련 과정 관련 여행 경비의 실비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총 예산이 2010년의 경우 9천만 달러 그리고 11년의 경우 2천2백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4,000의 초기 지원금과 \$8,000의 이차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USDA는 회계연도내의 신청서 제출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감소분이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계연도 2010년의 경우 예산은 7,300명의 참가자에게 여행경비와 사업계획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00명의 생산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장기계획까지 작성한다면 일인당 총 지원금은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4,5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 **중요한 마감일들**

**생산품 인증 요청 관련:** 생산자 모임이나 대표단은 2008년 혹은 그 이후의 곡물에 대해 연방관보에 고시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일:** 신청서의 제출일은 FAS 930(상품신청서)이 접수되고 FAS가 접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제출일 기준 USDA의 국내 상품 가격이 과거 삼년간의 평균 국내 가격보다 낮음을

근거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공청회 개최 요구 마감일:** FAS 주무관이 연방관보에 각각의 상품인증 신청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이러한 고시 발행 10일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은 공청회를 요구하거나 혹은 신청 관련 코멘트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청원:** 접수된 신청서에서 다른 주 혹은 다른 지역의 생산자로 적시된 생산자들도 신청서 접수에 관한 고시가 관보에 실린 15일 이내에 그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혜 자격 확정일:** 확정일은 FAS가 관보 혹은 농무부 소식지에 상품이 인증되었으니 생산자들이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빠른 날짜입니다. 이 인증날짜가 생산자들의 개별 신청서 제출 기간(90일)의 起算日이 됩니다.

**생산자 개별 신청 마감일:** 생산자 개별 신청서(FSA-229-1)은 각각의 생산품에 고시된 90일 접수기간 내에 접수되어야합니다.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한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사업계획 완료일:** 일차 사업계획과 장기 사업조정계획은 신청서 인증이후 36개월 이내에 완성되고 승인되어야합니다.

### **이의 신청 및 항소**

자격이 부인 되었거나 지원을 수혜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FAS 무역정책국의 부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S의 최종 결정은 뉴욕시 소재 미국 연방 국제 무역 재판소(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적인 설명은 지원이나 자격이 부인된 생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 될 것입니다.

### **추가정보**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www.fas.usda.gov/](http://www.fas.usda.gov/) 혹은 가까운 FAS 서비스센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미국의 立法例

### 2002년 미국 무역법하의 농민 TAA 주요 조항

Subtitle C - Trade Assistance for Farmers

#### 141 조. 농민을 위한 무역 조정 지원

(a) 총칙— 1974년 무역법의 2장 (19 U.S.C. 2251 이하)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 291조: 정의

- (1)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 -- 농산품은 가축을 포함한 모든 가공이전의 농산품을 의미한다.
- (2) 농산품 생산자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 농산품 생산자의 정의는 1985년 식품안전법 1001(5)조의 ‘person’ 의 정의와 같다.
- (3) 중요하게 기여함 (Contributed Importantly): (A) ‘중요하게 기여함’ 이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할 필요까지는 없는 요인을 의미함. (B) 중요하게 기여함의 판단 —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이 신청서 농산품의 가격하락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장관이 한다.
- (4) 위임 대리인 — 위임대리인은 농산품 생산자 단체이다.
- (5) 국가 평균가격 — 국가평균가격은 장관이 결정한 가격으로 특정 농산품에 대해 생산자에게 지불된 국가 전체의 평균가격이다.
- (6) 장관 — 장관은 농무부장관을 의미한다.

#### 292조. 신청서; 단체 자격

- (a) 본 챕터의 조정 지원 수혜자격의 인증을 요청하는 신청서는 생산자들이 집단으로 혹은 위임대리인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심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즉시 연방관보에 告示 한다.
- (b) 공청회(Hearings) -- 신청인 혹은 장관이 판단하기에 신청 절차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자는 상기 (a)의 고시 10일 이내에 공청회 요구를 제출할 수 있고 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출석 권, 증거 제출권, 진술권을 제공하여야한다.
- (c) 그룹 자격 요건 — 장관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시 장관은 생산자



그룹을 조정 지원 신청 자격이 있다고 인증 하여야 한다: (1) 그룹이 경작한 농산품의 국가 평균가가 산출되어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의 평균가격이 가장 최근년도부터 지난 오년간의 상응하는 생산물 국가 평균 가격의 80%에 미달하고; (2) 비슷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1)항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

(d) 자격이 유지되는 후속년도에 대한 특별 규정: 지원을 수혜할 자격이 있다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 그룹은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연도의 후속년도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계속 지원을 받을 자격을 유지 한다: (1) 그룹이 생산한 당해 생산품의 국가 평균 가격이 상기 © (1)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으며 (2) ©(2)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장관이 판단 할 것.

(e) 자격 유지 년도와 생산품의 결정 -- (1) 자격 유지 년도 — 자격 유지 년도라 함은 293조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 그룹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후의 후속년도 중 장관이 상기 c항과 d항의 결정을 내린 년도를 의미한다. (2) 생산품 내의 재화 — 만약 특정 농산품이 여러 재화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장관은 각각의 재화를 국가 평균 가격, 그룹 지원 자격, 수입의 정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별개의 농산품으로 다루어야한다.

### 293조. 농무부장관의 결정

(a) 제 292조의 신청이 제출되면 40일 이내에 장관은 신청자 그룹이 292(c) 혹은 (d)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충족하고 있을 시 즉시 지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발행하여야한다. 이러한 인증은 자격 開始日을 반드시 명기하여야한다.

(b) 고시 —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장관은 신속히 연방관보에 결정의 요약과 이유를 고시하여야한다.

(c) 인증 취소 — 장관이 기 인증을 받은 농산품의 가격하락이 292조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 내역과 사유를 연방 관보에 고시한다,

### 294조.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농무부장관의 연구

(a) 국제무역위원회(“위원회”)가 202조하의 조사를 개시하고자 할 때 위원회는 장관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장관은 즉시 다음을 조사, 연구 하여야 한다: (1)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중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의 數, 그리고 (2)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생산자들의 수입과의 경쟁이 조정될 수 있는 정도

(b) 보고서 -- 위원회가 202(f)조의 보고서를 내면 장관은 15일 이내에 (a)의 연구를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대통령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장관은 같은 내용의 보고서(비밀 항목은 제외함)를 연방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95조. 농산품 생산자에 대한 혜택 내용의 정보 제공

(a) 장관은 농산품 생산자들에게 모든 혜택, 지원금, 교육기회, 신청 기한, 절차, 기타 취업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관은 생산자 단체들이 신청서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한다.

(b) 혜택의 고지 -- (1) 장관은 본 챕터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모든 혜택의 내용을 담은 서면 고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또한 이러한 생산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간지에 이러한 고지를 실어야한다. (3) 또한 장관은 연방의 다른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한다.

### 296조. 농산품 인증 절차

(a) 총칙 --

(1) 요건: 무역조정 지원금은 293조의 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중 293조 인증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A) 생산자가 장관에게 관련 생산량을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였을 것. (B) 생산자가 기타 다른 연방 프로그램하에서 현금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선서를 하였을 것. (C) 생산자의 최근년도 순수농업소득(장관이 결정)이 생산자가 이 챕터상의 혜택을 수령하지 않은 가장 최근 과거년도 순수농업소득보다 적을 것. (D) 생산자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를 얻고자 Extension Service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만나서 상담 받은 적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限度 -- (i)

(A) 조정총수익(Adjusted Gross Income) -- 동 챕터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D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조정총수익을 가진 농산품생산자는 지원 수혜 자격이 없다.

(ii) 확인서 — 상기 (A) 관련, 관련 개인이나 법인은 장관에게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공인회계사나 기타 장관이 인정한 제삼자의 생산자의 조정총수익이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D조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혹은 (II) 장관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 생산자의 조정총수익에 관한 정보 및 서증

(B) 반순환 지불금 (Counter-Cyclical Payments): 동 챕터에서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지불금의 총액은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c조dp 명시된 반순환지불금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C) 정의 --

(i) 조정총수익: 조정총수익이란 생산자의 다음 수익을 의미한다: (I) 1986 세법 62조의 수익; 그리고 (II) 농업 소득 그리고 비농업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ii) 평균조정총수익: 평균조정총수익이란 과거 삼년간의 조정총수익의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III) 유효조정총수익 (Effective Adjusted Gross Income) - 과거 삼년간의 평균조정총수익이 없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유효조정총수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장관이 별도의 규정을 둔다.

(b) 현금지원액

(1) 298조의 예산 규모에 제한을 받으면서 (a)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다음 항목의 곱으로 (A x B) 계산되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A) 다음 차액(ii-i)의 1/2 -- (i) 과거 5년간 국가 평균의 80% 그리고 (ii) 가장 최근년도의 국가 평균, 곱하기 (B) 가장 최근 년도에 생산된 당해 농산품의 생산량.

(2) 후속년도에 대한 특별규정 — 후속년도의 지원 규모는 (1)과 동일하게 계산되나 국가평균가격은 처음 인증 시 사용된 과거 5년 평균값을 사용한다.

(c) 현금 지원의 한도 - 현금 지원 총액은 12개월에 \$10,000을 초과할 수 없다.

(d) 다른 지원의 제한 - 이 챕터에서 현금 지원을 받은 생산자는 (1) 동법의 다른 프로그램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으며 (2) Chapter 2 sub-chapter B의 고용 서비스나 훈련 지원에는 수혜자격이 있다.

## 297조. 기망(Fraud) 및 과다 지급분의 반환

(a) (1) 반환금 - 장관 혹은 법원이 수혜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을 수혜한 자는 장관에게 수령액을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장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관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A) 지원금이 수령자의 잘못이 없이 지급되었고 (B) 반환 요구가 양심이나 형평에 어긋날 경우이다.

(2) 과다 지급분의 반환 - 과다지급분이 다른 방식으로 회수되었거나 혹은 상기 (1)에 의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장관은 이 챗터에서 수령자에게 추가 지급할 부분에서 과다지급분을 相計하여 지급할 수 있다.

(b) 허위진술(False Statement) - 법에 정해진 벌칙과는 별도로 (1) 장관이나 법원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자는 이 챗터의 어떤 지원금도 수령할 수 없다: (A)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제삼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한자; 혹은 (B)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하지 않거나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유도한 자, 그리고 (2) 이러한 허위진술이나 미공개의 결과로 수혜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다.

(c) 고지와 결정 - 과다 지급여부를 법원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수령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후 공평한 청문의 기회를 제공한 후 중국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반환 청구나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d) 재무부에 대한 반환 - 동 챗터에 의거하여 복구된 반환금은 미국 재무부에 귀속된다.

(e) 처벌 - 동 챗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혹은 수령액을 증가하고자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는 \$10,000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모두에 처한다.


## 298조. 예산 배정

(a) 동 챗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무부에 매년 \$90,000,000 이하의 예산을 배정한다.

(b) 비율 감소 - 만약 실제 배정된 예산이 지원금 교부에 부족한 경우 각 지원금은 비율에 따라 감소 지급된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arm Service Agency



[Home](#)
[About FSA](#)
[State Offices](#)
[Newsroom](#)
[Online Services](#)
[Help](#)
[Contact Us](#)
[En Español](#)

You are here: [FSA Home](#) / [Newsroom](#) / [Fact Sheets](#)

## Newsroom

Search FSA

● Search Tips

Browse by Audience

Information For... ▾

Browse by Subject

- ▶ Aerial Photography
- ▶ ARC/PLC Programs
- ▶ Commodity Operations
- ▶ Conservation Programs
- ▶ 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
- ▶ Direct and Counter-Cyclical Program/ACRE
- ▶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 ▶ Economic and Policy Analysis
- ▶ Energy Programs
- ▶ Environmental and Cultural Resource Compliance
- ▶ Farm Loan Programs
- ▶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 ▶ Laws and Regulations
- ▶ MIDAS
- ▶ Outreach and Education
- ▶ Payment Eligibility
- ▶ Price Support
- ▶ Tobacco

Program Fact Sheets

[Click here for a PDF version \(352 KB\) of this fact sheet.](#)

April 2011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for Farmers

**Overview**

Producers of raw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fishery products that are determined by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administrator to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imports may apply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sh payments unde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for Farmers program. Producers establish eligibility for TAA for Farmers program benefits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at their local Farm Service Agency (FSA) Service Center. The technical assistance is provided in several increments.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is a locally scheduled 2 to 4-hour program orientation that explains how the program can help producers improve the yield and marketability of the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determine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substituting one or more alternative agricultural commodities for the commodity adversely affected by import competition, and offer advice and assistance on how to adjust to import competition.

A producer who completes the orientation is eligible to participate in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which is a series of workshops on marketing and production strategies, financial and business management, and alternative enterprises and business plan development. This training will prepare producers to develop an initial business plan and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Upon FSA's approval of the initial business plan, the producer is eligible to receive a maximum \$4,000 cash payment to implement his or her plan or to further develop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Training provides individual assistance to complete and implement a long-term business plan. Producers that complete a long-term plan are eligible to receive up to an additional \$8,000 cash payment.

**TAA Implementation**

The TAA for Farmers program is administered by FAS with FSA responsible for processing applications and making payments to eligible producers. The Center for Farm Financial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chedules and administers local technical training. Most training will be conducted by local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specialists who also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business plans and recommending cash benefits provided under the program.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reauthorizes and modifies the TAA for Farmers program as established by Subtitle C of Title I of the Trade Act of 2002 (Pub. L. 107-210), which amended the Trade Act of 1974.

**How Does a Commodity Qualify?**

A group of producers (three or more) or commodity organizations may request a commodity to be certified as eligible for TAA for Farmers by submitting FAS-930, Petition for Certification, to FAS in Washington, DC. This form is available online at <http://forms.sc.egov.usda.gov/eForms/welcomeAction.do?Home>. For a commodity to qualify, the FAS Administrator mus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a greater than 15 percent decline in its national average price, or quantity of production, or value of production, or cash receipts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three preceding marketing years.







Related Topics

- [Fact Sheets](#)
- [News Releases](#)
- [Emergency Designation News Releases](#)
- [Spotlights](#)
- [Fence Post](#)
- [Media Relations Contacts](#)
-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 [Meetings & Events](#)
- [County Committee Elections](#)
- [Subscriptions](#)
- [RSS Feeds](#)
- [eFOIA](#)
- [FSA Widgets](#)

I Want To...

- [View FSA Biographies](#)

STAY CONNECTED:

Media Help

To view PDF files you must have [Adobe Acrobat Reader](#) installed on your computer.

To view Flash files you must have [Adobe Flash Player](#) installed on your computer.

<http://www.fsa.usda.gov/FSA/newsReleases?area=newsroom&subject=landing&topic=pfs&newstype=pr...> 2014-11-02

To be eligible, a commodity must be in its raw or natural state as defined in chapters 1, 3, 4, 5, 6, 7, 8, 10, 12, 14, 23, 24, 41, 51, or 52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These schedules can be viewed at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

When a petition has been accepted for review, FAS wi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and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identifies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cluding any similar or directly competitive commodities, the marketing year under investigation, data being used for comparison/determination, and production area covered by the petitio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other producers of the commodity or related commodities to join or request a public hearing about the petition.

FAS will complete its review of each petition and announce no later than 40 calendar days after the petition has been accepted for review whether the commodity has been "certified" (approved for benefits) and the marketing year of such certification. The certification announcement will als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Applicant eligibility requirements**

**Application Submission:** Producers of certified commodities may apply for benefits of the TAA for Farmers program by submitting a written application (FSA-229-1) to their local FSA Service Center within 90 calendar days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is announced in the Federal Register. The application form is available at FSA offices or at:

<http://forms.sc.egov.usda.gov/eForms/welcomeAction.do?Home>.

If the application period ends on a weekend or holiday, the producer may apply the following business day.

**Production and Price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sh payments a producer must: 1) have produced the commodity during the specific marketing year for which the commodity was determined eligible and at least one of the three marketing years preceding that year; and 2) certify or document compli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three options.

Option 1: Did the applicant produce less of the commodity during the marketing year for which the petition is certified than during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preceding the petition marketing year. Option 2: Did the applicant or producers of the certified commodity in the same state or region receive a lower price for production of the petitioned commodity during the petition marketing year compared to the average price received during the prior three years in which the commodity was produced. Option 3: Is USDA's state or regional price for the petitioned commodity on the petition filing date less than USDA's average county price for the past three consecutive marketing years. Applicants selected for spot check must provide documentation of their compliance with these production and/or price requirements.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Payment Limit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both technical assistance and payments a producer must comply with AGI requirements. For 2008 commodities the total AGI limit is \$2.5 million and the three years for which AGI is determined are 2005, 2006 and 2007. For 2009 and subsequent crops, the applicant's average adjusted gross nonfarm income must be \$500,000 or less for the three taxabl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ull taxable year for which the petition is certified. (Example: for a 2009-crop TAAF commodity, the AGI is averaged for 2005, 2006 and 2007.) An applicant whose income exceeds the applicable AGI limit is ineligible for any assistance under TAA for Farmers.

TAA for Farmers business plan payments count toward the limitations applicable to counter-cyclical and the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ayments of \$65,000 per crop year. Therefore, if an applicant has exceeded such payment limit for the marketing year of the TAA for Farmers petition, the applicant is ineligible for business plan payments and reimbursement of training-related travel expenses; however, that applicant is eligible for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According to rules established for the TAA for Farmers program, a producer who receives benefits for a certified commodity may not receive benefits under another TAA for Farmers petition or under the TAA for workers or firms programs. Applicants cannot receive more than \$12,000 in a 36-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petition certification date. Travel reimbursements do not count against this \$12,000 limit. Payments received under fiscal year 2004 through 2006 TAA programs do not limit eligibility for these new benefits.

**Technical Assistance and Business Plan Requirements:** Applicants meeting basic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AA for Farmers will

have access to four training components or phases: Initial Orientation;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Initial Business Plan; and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Training. Attendance at the orientation training is a prerequisite for receiving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and long 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training and cash benefits. Producers are required to attend orientation training within 180 calendar days of the petition certification date. Applicants may request reimbursement for travel expenses incurred to attend Phase I training subject to federal travel guidelines. Travel costs are not reimbursed for attending any subsequent training.

Producers who complete the orientation training are eligible for a series of workshops customized to address key topics for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producers of the eligible commodity. This training also will help participants develop an initial business plan. Participation in workshops is expected to require no less than 12 hours. Applicants who complete the required training and an approved initial business plan will be eligible for a cash payment of up to \$4,000 to implement the plan or to develop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Upon FSA approval of the initial business plan, participants will be eligible to receive help developing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Upon approval of the completed plan, the producer is eligible to receive an additional payment of up to \$8,000 to implement the plan. Producers must complete their plan(s) within 36 months from the petition certification date. Criteria for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s will be presented to producers during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training sessions.

#### **Program Funding Limitation**

USDA may authorize reimbursement to applicants (at federal travel rates) for travel expenses incurred to attend Phase I training; however, because program funds are capped at \$90 million for FY 2010 and \$22.5 million for FY 2011, business plan payments (\$4,000 for the initial plan and \$8,000 for the long-term adjustment plan) may be reduced so disbursements do not exceed available funding.

USDA will not know the likelihood or severity of any such payment reduction until the close of all petition enrollment periods within a fiscal year. The \$90 million appropriated for FY 2010, for example, is sufficient to disburse average travel expenses and maximum business plan payments for about 7,300 applicants. For example, if 20,000 producers enroll, participate and qualify for both plan payments, total payment to any one applicant could not exceed \$4,500 inclusive of travel expenses.

#### **Important Deadlines**

**Request for Commodity Approval:** A group of individuals or their commodity representatives must submit petitions requesting certification of a 2008 or subsequent-crop commodity for benefits no later than the last day of the filing period announced in the Federal Register. Petitions received late will not be accepted.

**Petition Filing Date:** The petition filing date is the date the commodity petition (FAS 930) was received and determined acceptable by FAS. The petition filing date is important to applicants that are establishing their eligibility based on whether USDA's county price on the petition filing date is less than USDA's average county price for the three marketing years preceding the petition filing date.

**Deadline for Request of Public Hearing about Petition:** The FAS administrator wi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for each commodity petition accepted for consideration. Within 10 calendar days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such notice, interested parties may request a public hearing or submit comments in regard to that petition.

**Request to Become Party to Petition:** A group of producers outside of the state or region identified in any petition accepted for consideration may submit a request to become a party to that petition no later than 15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that the notice announcing that a petition has been accepted i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Date:** The certification date is the date when the FAS administrator announces in the Federal Register or by department news release, whichever comes first, that a petition has been certified and producers may apply for benefits. The certification date starts the 90-calendar-day application period for producers of that commodity.

**Producer Application Deadline:** Producer applications (FSA-229-1) must be received by FSA no later than the last day of the 90-calendar-day application period announced for each approved



commodity. Applications received late will not be approved for benefits.

**Business Plan Completion Deadline:** The initial and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s must be completed and approved within 36 months from the petition certification date.

#### **Appeals**

Producers may appeal any eligibility or benefit disapprovals under TAA for Farmers to the Deputy Administrator, Office of Trade Programs, FAS. Any final determination provided by FAS may be appealed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 New York City. Detailed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ppeals are provided to producers whose requested benefits are denied or reduced.

#### **For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TAA for Farmers program, visit FAS online at [www.fas.usda.gov/](http://www.fas.usda.gov/), a nearby FSA Service Center office, or FSA online at [www.fsa.usda.gov/](http://www.fsa.usda.gov/).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prohibits discrimination in all of its programs and activities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and where applicable, sex, marital status, familial status, parental status, religion, sexual orientation, political beliefs, genetic information, reprisal, or because all or part of an individual's income is derived from any public assistance program. (Not all bases apply to all programs.)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alternative means for communication of program information (Braille, large print, audiotape, etc.) should contact USDA's TARGET Center at (202) 720-2600 (voice and TDD).

To file a complaint of discrimination, write to USDA,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Stop 9410, Washington, DC 20250-9410, or call toll-free at (866) 632-9992 (English) or (800) 877-8339 (TDD) or (866) 377-8642 (English Federal-relay) or (800) 845-6136 (Spanish Federal-relay). USDA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and employer.

[FSA Home](#) | [USDA.gov](#) | [Common Questions](#) | [Site Map](#) | [Policies and Links](#)  
[FOIA](#) | [Accessibility Statement](#) | [Privacy Policy](#) | [Nondiscrimination Statement](#) | [Information Quality](#) | [USA.gov](#) | [White House](#)



H. R. 3009

# One Hundred Seven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SECOND SESSION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Wednesday,  
the twenty-third day of January, two thousand and two*

## An Act

To extend 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to grant additional trade benefits under that Act,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Trade Act of 2002".

### SEC. 2. ORGANIZATION OF ACT INTO DIVISIONS; TABLE OF CONTENTS.

(a) DIVISIONS.—This Act is organized into 5 divisions as follows:

- (1) DIVISION A.—Trade Adjustment Assistance.
- (2) DIVISION B.—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 (3) DIVISION C.—Andean Trade Preference Act.
- (4) DIVISION D.—Extension of Certain Preferential Trade Treatment and Other Provisions.
- (5) DIVISION E.—Miscellaneous Provisions.

(b) TABLE OF CONTENTS.—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Sec. 1. Short title.

Sec. 2. Organization of Act into divisions; table of contents.

#### DIVISION A—TRADE ADJUSTMENT ASSISTANCE

Sec. 101. Short title.

#### TITLE I—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 Subtitle A—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 Sec. 111. Reauthorizat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 Sec. 112. Filing of petitions and provision of rapid response assistance; expedited review of petitions by secretary of labor.
- Sec. 113. Group eligibility requirements.
- Sec. 114. Qualifying requirements for trade readjustment allowances.
- Sec. 115. Waivers of training requirements.
- Sec. 116. Amendments to limitations on trade readjustment allowances.
- Sec. 117. Annual total amount of payments for training.
- Sec. 118. Provision of employer-based training.
- Sec. 119. Coordination with title I of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 Sec. 120. Expenditure period.
- Sec. 121. Job search allowances.
- Sec. 122. Relocation allowances.
- Sec. 123. Repeal of NAFTA 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 Sec. 124. Demonstration project for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older workers.
- Sec. 125. Declaration of policy; sense of Congress.

##### Subtitle B—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Sec. 131. Reauthorization of program.

##### Subtitle C—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Sec. 141.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H. R. 3009—2

- Sec. 142. Conforming amendments.
- Sec. 143. Study on TAA for fishermen.

Subtitle D—Effective Date

- Sec. 151. Effective date.

TITLE II—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OF ELIGIBLE INDIVIDUALS

- Sec. 201. 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of individuals receiving a trade readjustment allowance or a benefit from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Sec. 202. Advance payment of 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of eligible individuals.
- Sec. 203. Health insurance assistance for eligible individuals.

TITLE III—CUSTOMS REAUTHORIZATION

- Sec. 301. Short title.

Subtitle A—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CHAPTER 1—DRUG ENFORCEMENT AND OTHE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OPERATIONS

- Sec. 311.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noncommercial operations, commercial operations, and air and marine interdiction.
- Sec. 312. Antiterrorist and illicit narcotics detection equipment for the United States-Mexico border, United States-Canada border, and Florida and the Gulf Coast seaports.
- Sec. 313. Compliance with performance plan requirements.

CHAPTER 2—CHILD CYBER-SMUGGLING CENTER OF THE CUSTOMS SERVICE

- Sec. 321.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program to prevent child pornography/child sexual exploitation.

CHAPTER 3—MISCELLANEOUS PROVISIONS

- Sec. 331. Additional Customs Service officers for United States-Canada Border.
- Sec. 332. Study and report relating to personnel practices of the Customs Service.
- Sec. 333. Study and report relating to accounting and auditing procedures of the Customs Service.
- Sec. 334.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reports.
- Sec. 335. Study and report relating to timeliness of prospective rulings.
- Sec. 336. Study and report relating to customs user fees.
- Sec. 337. Fees for customs inspections at express courier facilities.
- Sec. 338. National Customs Automation Program.
- Sec. 339.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customs staffing.

CHAPTER 4—ANTITERRORISM PROVISIONS

- Sec. 341. Immunity for United States officials that act in good faith.
- Sec. 342. Emergency adjustments to offices, ports of entry, or staffing of the customs service.
- Sec. 343. Mandatory advanced electronic information for cargo and other improved Customs reporting procedures.
- Sec. 343A. Secure systems of transportation.
- Sec. 344. Border search authority for certain contraband in outbound mail.
- Sec. 345.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reestablishment of customs operations in New York City.

CHAPTER 5—TEXTILE TRANSSHIPMENT PROVISIONS

- Sec. 351. GAO audit of textile transshipment monitoring by Customs Service.
- Sec. 352.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textile transshipment enforcement operations.
- Sec. 353.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Subtitle B—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Sec. 361.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ubtitle 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Sec. 371.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ubtitle D—Other trade provisions

- Sec. 381. Increase in aggregate value of articles exempt from duty acquired abroad by United States residents.

H. R. 3009—3

- Sec. 382. Regulatory audit procedures.
- Sec. 383. Payment of duties and fees.

DIVISION B—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TITLE XXI—TRADE PROMOTION AUTHORITY

- Sec. 2101. Short title and findings.
- Sec. 2102.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 Sec. 2103. Trade agreements authority.
- Sec. 2104. Consultations and assessment.
- Sec. 2105.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 Sec. 2106. Treatment of certain trade agreements for which negotiations have already begun.
- Sec. 2107. Congressional Oversight Group.
- Sec. 2108. Additional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requirements.
- Sec. 2109. Committee staff.
- Sec. 2110. Conforming amendments.
- Sec. 2111. Report on impact of trade promotion authority.
- Sec. 2112. Interests of small business.
- Sec. 2113. Definitions.

DIVISION C—ANDEAN TRADE PREFERENCE ACT

TITLE XXXI—ANDEAN TRADE PREFERENCE

- Sec. 3101. Short title.
- Sec. 3102. Findings.
- Sec. 3103. Articles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 Sec. 3104. Termination.
- Sec. 3105. Report on Free Trade Agreement with Israel.
- Sec. 3106. Modification of duty treatment for tuna.
- Sec. 3107. Trade benefits under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Sec. 3108. Trade benefits under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DIVISION D—EXTENSION OF CERTAIN PREFERENTIAL TRADE TREATMENT

TITLE XLI—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Sec. 4101. 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Sec. 4102. Amendments t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DIVISION E—MISCELLANEOUS PROVISIONS

TITLE L—MISCELLANEOUS TRADE BENEFITS

Subtitle A—Wool Provisions

- Sec. 5101. Wool provisions.
- Sec. 5102. Duty suspension on wool.

Subtitle B—Other Provisions

- Sec. 5201. Fund for WTO dispute settlements.
- Sec. 5202. Certain steam or other vapor generating boil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 Sec. 5203. Sugar tariff-rate quota circumvention.

**DIVISION A—TRADE ADJUSTMENT ASSISTANCE**

**SEC. 101. SHORT TITLE.**

This division may be cited as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 of 2002”.

“(1)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no payments may be made by a State under the program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1) after the date that is 5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State.

“(2) EXCEPTION.—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worker receiving payments under the program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1) on the termination dat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continue to receive such payments provided that the worker meets the criteria described in subsection (a)(3)(B).”.

(b) TABLE OF CONTENTS.—The Trade Act of 1974 (U.S.C. et seq.) is amended in the table of contents by inserting after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245 the following new item:

“Sec. 246. Demonstration project for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older workers.”.

#### **SEC. 125. DECLARATION OF POLICY; SENSE OF CONGRESS.**

(a) DECLARATION OF POLICY.—Congress reiterates that, unde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under chapter 2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workers are eligible for transportation, childcare, and healthcare assistance, as well as other related assistance under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b) SENSE OF CONGRESS.—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Labor, working independently and in conjunction with the States, shoul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25 of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benefit allowances, training, and other employment services, and the peti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s (including appropriate filing dates) for such allowances, training, and services, unde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under chapter 2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to workers who are applying for, or are certified to receive, assistance under that program, including information on all other Federal assistance available to such workers.

### **Subtitle B—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 **SEC. 131. REAUTHORIZATION OF PROGRAM.**

Section 256(b) of chapter 3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346(b))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b)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Secretary \$16,000,000 for each of fiscal years 2003 through 2007, to carry out the Secretary’s functions under this chapter in connection with furnishing adjustment assistance to firms. Amounts appropriat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 **Subtitle C—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 **SEC. 141.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a) IN GENERAL.—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251 et seq.)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chapter:

**“CHAPTER 6—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SEC. 291. DEFINITIONS.**

“In this chapter:

“(1) AGRICULTURAL COMMODITY.—The term ‘agricultural commodity’ means any agricultural commodity (including livestock) in its raw or natural state.

“(2)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The term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has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person’ as prescribed by regulations promulgated under section 1001(5)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7 U.S.C. 1308(5)).

“(3) CONTRIBUTED IMPORTANTLY.—

“(A) IN GENERAL.—The term ‘contributed importantly’ means a cause which is important but not necessarily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cause.

“(B) DETERMINATION OF CONTRIBUTED IMPORTANTLY.—The determination of whether imports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an agricultural commodity with respect to which a petition under this chapter was filed contributed importantly to a decline in the pric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

“(4)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The term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means 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5) NATIONAL AVERAGE PRICE.—The term ‘national average price’ means the national average price paid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for an agricultural commodity in a marketing year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6) SECRETARY.—The term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EC. 292. PETITIONS; GROUP ELIGIBILITY.**

“(a) IN GENERAL.—A petition for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to apply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may be filed with the Secretary by 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or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Upon receipt of the petition, the Secretary shall promptly publis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hat the Secretary has received the petition and initiated an investigation.

“(b) HEARINGS.—If the petitioner, or any other person found by the Secretary to have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proceedings, submits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Secretary’s publication under subsection (a) a request for a hearing, the Secretary shall provide for a public hearing and afford such interested person an opportunity to be present, to produce evidence, and to be heard.

“(c) GROUP ELIGIBILITY REQUIREMENTS.—The Secretary shall certify 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s eligible to apply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f the Secretary determines—

“(1) that the national average price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or a class of goods within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for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for which the national average price is available is less than 80 percent of the average of the national average price for such agricultural commodity, or such class of goods, for

the 5 marketing years preceding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and

“(2) that increases in imports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agricultural commodity, or class of goods within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e decline in price described in paragraph (1).

“(d) SPECIAL RULE FOR QUALIFIED SUBSEQUENT YEARS.—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certified as eligible under section 293 shall be eligible to apply for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n any qualified year after the year the group is first certified,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1) the national average price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or class of goods within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for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for which the national average price is available is equal to or less than the price determined under subsection (c)(1); and

“(2)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c)(2) are met.

“(e) DETERMINATION OF QUALIFIED YEAR AND COMMODITY.—In this chapter:

“(1) QUALIFIED YEAR.—The term ‘qualified year’, with respect to 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certified as eligible under section 293, means each consecutive year after the year in which the group is certified and in which the Secretary makes the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c) or (d), as the case may be.

“(2) CLASSES OF GOODS WITHIN A COMMODITY.—In any case in which there are separate classes of goods within an agricultural commodity, the Secretary shall treat each class as a separate commodity in determining group eligibility, the national average price, and level of imports under this section and section 296.

#### “SEC. 293. DETERMINATIONS BY SECRETARY OF AGRICULTURE.

“(a) IN GENERAL.—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date on which a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292,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40 days after that date, the Secretary shall determine whether the petitioning group meet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92 (c) or (d), as the case may be, and shall, if the group meets the requirements, issue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to apply for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covering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in any group that meets the requirements. Each certification shall specify the date on which eligibility under this chapter begins.

“(b) NOTICE.—Upon making a determination on a petition, the Secretary shall promptly publish a summary of the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together with the Secretary’s reasons for making the determination.

“(c) TERMINATION OF CERTIFICATION.—Whenever the Secretary determines, with respect to any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this chapter, that the decline in price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certification is no longer attributable to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ection 292, the Secretary shall terminate such certification and promptly cause notice of such termination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ogether with the Secretary’s reasons for making such determination.

**“SEC. 294. STUDY BY SECRETARY OF AGRICULTURE WHE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BEGINS INVESTIGATION.**

“(a) **IN GENERAL.**—Whenever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begins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02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the Commissio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 of the investigation. Upo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he Secretary shall immediately conduct a study of—

“(1) the number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gricultural commodity who have been or are likely to be certified as eligible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and

“(2) the extent to which the adjustment of such producers to the import competition may be facilitated through the use of existing programs.

“(b) **REPORT.**—Not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Commission makes its report under section 202(f), the Secretary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setting forth the findings of the study described in subsection (a). Upon making the report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shall also promptly make the report public (with the exception of information which the Secretary determines to be confidential) and shall have a summary of the report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SEC. 295. BENEFIT INFORMATION TO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 **IN GENERAL.**—The Secretary shall provide full information to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bout the benefit allowances, training, and other employment services available under this title and about the peti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s, and the appropriate filing dates, for such allowances, training, and services. The Secretary shall provide whatever assistance is necessary to enable groups to prepare petitions or applications for program benefits under this title.

“(b) **NOTICE OF BENEFITS.**—

“(1) **IN GENERAL.**—The Secretary shall mail written notice of the benefits available under this chapter to each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that the Secretary has reason to believe is covered by a certification made under this chapter.

“(2) **OTHER NOTICE.**—The Secretary shall publish notice of the benefits available under this chapter to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that are covered by each certification made under this chapter in newspapers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areas in which such producers reside.

“(3) **OTHER FEDERAL ASSISTANCE.**—The Secretary shall als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nd receiving all other Federal assistance and services available to workers facing economic distress.

**“SEC. 296. QUALIFYING REQUIREMENTS FOR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 **IN GENERAL.**—

“(1) **REQUIREMENTS.**—Payment of a trade adjustment allowance shall be made to an adversely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covered by a certification under this chapter who files an application for such allowance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makes a determination



and issues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ection 293,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producer submits to the Secretary sufficient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amount of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application filed under subsection (a) that was produced by the producer in the most recent year.

“(B) The producer certifies that the producer has not received cash benefits under any provision of this title other than this chapter.

“(C) The producer’s net farm income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for the most recent year is less than the producer’s net farm income for the latest year in which no adjustment assistance was received by the producer under this chapter.

“(D) The producer certifies that the producer has met with an Extension Service employee or agent to obtain, at no cost to the producer,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hat will assist the producer in adjusting to import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adversely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including—

“(i) information regarding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substituting 1 or more alternative commodities for the adversely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and

“(ii) technical assistance that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adversely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by the producer, including yield and marketing improvements.

“(2) LIMITATIONS.—

“(A) ADJUSTED GROSS INCOME.—

“(i) IN GENERAL.—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shall not be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n any year in which the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of the producer exceeds the level set forth in section 1001D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ii) CERTIFICATION.—To comply with the limitation under subparagraph (A), an individual or entity shall provide to the Secretary—

“(I) a certification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nother third party that is acceptable to the Secretary that the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of the producer does not exceed the level set forth in section 1001D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or

“(II)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garding the adjusted gross income of the producer through other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B) COUNTER-CYCLICAL PAYMENTS.—The total amount of payments made to an agricultural producer under this chapter during any crop year may not exceed the limitation on counter-cyclical payments set forth in section 1001(c)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C) DEFINITIONS.—In this subsection:

“(i) ADJUSTED GROSS INCOME.—The term ‘adjusted gross income’ means adjusted gross incom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I) as defined in section 6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and

“(II) that is ear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ll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ources of an individual or entity for a fiscal or corresponding crop year.

“(ii)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I) IN GENERAL.—The term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means the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of a producer for each of the 3 preceding taxable years.

“(II) EFFECTIVE ADJUSTED GROSS INCOME.—In the case of a producer that does not have an adjusted gross income for each of the 3 preceding taxable years,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rules that provide the producer with an effective adjusted gross income for the applicable year.

“(b) AMOUNT OF CASH BENEFITS.—

“(1) IN GENERAL.—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98, an adversely affected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entitled to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n an amount equal to the product of—

“(A) one-half of the difference between—

“(i) an amount equal to 80 percent of the average of the national average pric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appl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for the 5 marketing years preceding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and

“(ii) the national average pric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for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and

“(B) the amount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in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2) SPECIAL RULE FOR SUBSEQUENT QUALIFIED YEARS.—

The amount of cash benefits for a qualified year shall b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cash benefits are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except that the average national pric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shall be determined under paragraph (1)(A)(i) by using the 5-marketing-year period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cash benefits for the first certification.

“(c) MAXIMUM AMOUNT OF CASH ASSISTANCE.—The maximum amount of cash benefits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may receive in any 12-month period shall not exceed \$10,000.

“(d) LIMITATIONS ON OTHER ASSISTANCE.—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entitled to receive a cash benefit under this chapter—

“(1) shall not be eligible for any other cash benefit under this title, and

“(2) shall be entitled to employment services and training benefits under part II of subchapter B of chapter 2.

**“SEC. 297. FRAUD AND RECOVERY OF OVERPAYMENTS.**

“(a) IN GENERAL.—

“(1) REPAYMENT.—If the Secretary, or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determines that any person has received any payment under this chapter to which the person was not entitled,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repay such amount to the Secretary,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waive such repayment if the Secretary determines,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that—

“(A) the payment was made without fault on the part of such person; and

“(B) requiring such repayment would be contrary to equity and good conscience.

“(2) RECOVERY OF OVERPAYMENT.—Unless an overpayment is otherwise recovered, or waived under paragraph (1), the Secretary shall recover the overpayment by deductions from any sums payable to such person under this chapter.

“(b) FALSE STATEMENT.—A person shall,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law, be ineligible for any further payments under this chapter—

“(1) if the Secretary, or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determines that the person—

“(A) knowingly has made, or caused another to make,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B) knowingly has failed, or caused another to fail, to disclose a material fact; and

“(2) as a result of such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of such nondisclosure, such person has received any payment under this chapter to which the person was not entitled.

“(c) NOTICE AND DETERMINATION.—Except for overpayments determin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no repayment may be required, and no deduction may be made, under this section until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a)(1) by the Secretary has been made, notice of the determination and an opportunity for a fair hearing thereon has been given to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determination has become final.

“(d) PAYMENT TO TREASURY.—Any amount recover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turned 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e) PENALTIES.—Whoever makes a fals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knowing it to be false, or knowingly fails to disclose a material fac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increasing for himself or for any other person any payment authorized to be furnish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10,000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SEC. 298.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 IN GENERAL.—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and there are appropriated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 to exceed \$90,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3 through 2007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b) PROPORTIONATE REDUCTION.—If in any year the amount appropriated under this chapter is in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djustment assistance payable under this chapter, the amount of assistance payable under this chapter shall be reduced proportionately.”.

(b)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this title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that is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EC. 142. CONFORMING AMENDMENTS.**

(a) JUDICIAL REVIEW.—

(1) Section 284(a)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395(a)) is amended—

(A) by inserting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as defined in section 291(2)) aggrieved by a determination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under section 293, ” after “section 251 of this title,”; and

(B) in the second sentence of subsection (a) and in subsections (b) and (c), by striking “or the Secretary of Commerce” each place it appears and inserting “, the Secretary of Commerce, or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b) CHAPTERS 6.—The table of contents for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by subparagraph (A),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the items relating to chapter 5 the following:

“CHAPTER 6—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Sec. 291. Definitions.

“Sec. 292. Petitions; group eligibility.

“Sec. 293. Determinations by Secretary of Agriculture.

“Sec. 294. Study by Secretary of Agriculture whe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begins investigation.

“Sec. 295. Benefit information to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Sec. 296. Qualifying requirements for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Sec. 297. Fraud and recovery of overpayments.

“Sec. 298.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EC. 143. STUDY ON TAA FOR FISHERMEN.**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conduct a study and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whether 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is appropriate and feasible for fishermen. For purposes of the preceding sentence, the term “fishermen” means any person who is engaged in commercial fishing or is a United States fish processor.

## Subtitle D—Effective Date

**SEC. 151. EFFECTIVE DATE.**

(a) IN GENERAL.—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s 123(c) and 141(b), and subsections (b), (c), and (d) of this section, the amendments made by this division shall apply to petitions for certification filed under chapter 2 or 3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after the date that is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b) WORKERS CERTIFIED AS ELIGIBLE BEFORE EFFECTIVE DATE.—Notwithstanding subsection (a), a worker shall continue to receive (or be eligible to rece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other benefits under chapter 2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as in effect on September 30, 2001, for any week for which the worker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uch chapter 2 as in effect on such date, if on or before such date, the worker—

(1) was certified as eligible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such chapter as in effect on such date; and



H. R. 1

#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FIRST SESSION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Tuesday,  
the sixth day of January, two thousand and nine*

## An Act

Making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job preservation and cre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energy efficiency and science, assistance to the unemployed, and State and local fiscal stabilization,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09,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SEC. 2.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 DIVISION A—APPROPRIATIONS PROVISIONS

TITLE I—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TITLE II—COMMERCE, JUSTICE, SCIENCE, AND RELATED AGENCIES  
TITLE III—DEPARTMENT OF DEFENSE  
TITLE IV—ENERGY AND WATER DEVELOPMENT  
TITLE V—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TITLE VI—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ITLE VII—INTERIOR, ENVIRONMENT, AND RELATED AGENCIES  
TITLE VIII—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TITLE IX—LEGISLATIVE BRANCH  
TITLE X—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TITLE XI—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TITLE XII—TRANSPORTATI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TITLE XIII—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ITLE XIV—STATE FISCAL STABILIZATION FUND  
TITLE XV—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ITLE XVI—GENERAL PROVISIONS—THIS ACT

#### DIVISION B—TAX, UNEMPLOYMENT, HEALTH, STATE FISCAL RELIEF, AND OTHER PROVISIONS

TITLE I—TAX PROVISIONS  
TITLE II—ASSISTANCE FOR UNEMPLOYED WORKERS AND STRUGGLING FAMILIES  
TITLE III—PREMIUM ASSISTANCE FOR COBRA BENEFITS  
TITLE IV—MEDICARE AND MEDICAI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MISCELLANEOUS MEDICARE PROVISIONS  
TITLE V—STATE FISCAL RELIEF  
TITLE VI—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TITLE VII—LIMITS ON EXECUTIVE COMPENSATION

### SEC. 3. PURPOSES AND PRINCIPLES.

(a) STATEMENT OF PURPOSES.—The purposes of this Act include the following:

H. R. 1—300

“Subchapter C—Industry or Sector Partnership Grant Program for Communities Impacted by Trade

“Sec. 279A. Industry or sector partnership grant program for communities impacted by trade.

“Sec. 279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ubchapter D—General Provisions

“Sec. 279C. Rule of construction.”

(b) JUDICIAL REVIEW.—

(1) Section 284(a)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395(a)) is amended—

(A) by inserting “or 296” after “section 293”;

(B) by striking “or any other interested domestic party” and inserting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a community”; and

(C) by striking “section 271” and inserting “section 273”.

(2) Section 1581(d)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A) in paragraph (2), by striking “; and” and inserting a semicolon;

(B) in paragraph (3)—

(i) by striking “271” and inserting “273”; and

(ii) by striking the period and inserting “; and”;

and

(C)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4) any final determination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under section 293 or 296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b) with respect to the eligibility of 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such Act.”.

**PART IV—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SEC. 1881. DEFINITIONS.**

Section 29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 is amended—

(1) by amending paragraph (1) to read as follows:

“(1) AGRICULTURAL COMMODITY.—The term ‘agricultural commodity’ includes—

“(A) any agricultural commodity (including livestock) in its raw or natural state;

“(B) any class of goods within an agricultural commodity; and

“(C) in the cas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described in paragraph (2)(B), wild-caught aquatic species.”;

(2) by amending paragraph (2) to read as follows:

“(2)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The term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means—

“(A) a person that shares in the risk of producing an agricultural commodity and that is entitled to a share of the commodity for marketing, including an operator, a sharecropper, or a person that owns or rents the land on which the commodity is produced; or

“(B) a person that reports gain or loss from the trade or business of fishing on the person’s annual Federal income tax return for the taxable year that most closely

corresponds to the marketing year with respect to which a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292.”; and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7) **MARKETING YEAR.**—The term ‘marketing year’ means—

“(A) a marketing year designated by the Secretary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or

“(B) in the cas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Secretary does not designate a marketing year, a calendar year.”.

**SEC. 1882. ELIGIBILITY.**

(a) **IN GENERAL.**—Section 292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a) is amended by striking subsections (c) through (e) and inserting the following:

“(c) **GROUP ELIGIBILITY REQUIREMENTS.**—The Secretary shall certify a group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s eligible to apply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1)(A) the national average pric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during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is less than 85 percent of the average of the national average price for the commodity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such marketing year;

“(B) the quantity of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during such marketing year is less than 85 percent of the average of the quantity of production of the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such marketing year;

“(C) the value of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during such marketing year is less than 85 percent of the average value of production of the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such marketing year; or

“(D) the cash receipts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during such marketing year are less than 85 percent of the average of the cash receipts for the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such marketing year;

“(2) the volume of imports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group in the marketing year with respect to which the group files the petition increased compared to the average volume of such imports during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such marketing year; and

“(3) the increase in such imports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e decrease in the national average price, quantity of production, or value of production of, or cash receipts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as described in paragraph (1).

“(d) **ELIGIBILITY OF CERTAIN OTHER PRODUCERS.**—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or group of producers that resides outside of the State or region identifi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ubsection (a) may file a request to become a party to that petition not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the notice i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under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that petition.

“(e) **TREATMENT OF CLASSES OF GOODS WITHIN A COMMODITY.**—In any case in which there are separate classes of goods within

an agricultural commodity, the Secretary shall treat each class as a separate commodity in determining under subsection (c)—

- “(1) group eligibility;
- “(2) the national average price, quantity of production, or value of production, or cash receipts; and
- “(3) the volume of imports.”.

(b) CONFORMING AMENDMENTS.—Section 293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b) is amended—

- (1) in subsection (a), by striking “section 292 (c) or (d), as the case may be,” and inserting “section 292(c)”; and
- (2) in subsection (c), by striking “decline in price for” and inserting “decrease in the national average price, quantity of production, or value of production of, or cash receipts for,”.

**SEC. 1883. BENEFITS.**

(a) IN GENERAL.—Section 296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296. QUALIFYING REQUIREMENTS AND BENEFITS FOR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a) IN GENERAL.—

“(1) REQUIREMENTS.—

“(A) IN GENERAL.—Benefits under this chapter shall be available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covered by a certification under this chapter who files an application for such benefit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makes a determination and issues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ection 293, if the producer submits to the Secretary sufficient information to establish that—

“(i) the producer produced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applica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in the marketing year with respect to which the petition is filed and in at least 1 of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that marketing year;

“(ii)(I) the quantity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that was produced by the producer in the marketing year with respect to which the petition is filed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most recent marketing year preceding that marketing yea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or

“(II)(aa) the price received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by the producer during the marketing year with respect to which the petition is filed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average price for the commodity received by the producer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that marketing year; or

“(bb) the county level price maintained by the Secretary for the agricultural commodity on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 is filed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average county level price for the commodity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 is filed; and

“(iii) the producer is not receiving—

“(I) cash benefits under chapter 2 or 3; or

“(II) benefits based on the production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another petition filed under this chapter.



“(B) SPECIAL RULE WITH RESPECT TO CROPS NOT GROWN EVERY YEAR.—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ii)(II)(aa), if a petition is filed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that is not produced by the producer every year,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producing that commodity may establish the average price received for the commodity by the producer in the 3 marketing years preceding the year with respect to which the petition is filed by using average price data for the 3 most recent marketing years in which the producer produced the commodity and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2) LIMITATIONS BASED ON ADJUSTED GROSS INCOME.—

“(A) IN GENERAL.—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shall not be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in any year in which the 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1001D(a)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7 U.S.C. 1308–3a(a))) of the producer exceeds the level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r (B) of section 1001D(b)(1)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7 U.S.C. 1308–3a(b)(1)), whichever is applicable.

“(B) DEMONSTRATION OF COMPLIANCE.—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shall provide to the Secretary such information as the Secretary determine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producer is in compliance with the limitation under subparagraph (A).

“(C) COUNTER-CYCLICAL AND ACRE PAYMENTS.—The total amount of payments made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under this chapter during any crop year may not exceed the limitations on payments set forth in subsections (b)(2), (b)(3), (c)(2), and (c)(3) of section 1001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7 U.S.C. 1308).

“(b) TECHNICAL ASSISTANCE.—

“(1)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A) IN GENERAL.—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that files an application and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subsection (a)(1)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design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ducer was certified under this chapter. Such assistance shall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i) improving the yield and marketing of that agricultural commodity; and

“(ii)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substituting one or more alternative agricultural commodities for that agricultural commodity.

“(B) TRANSPORTATION AND SUBSISTENCE EXPENSES.—

“(i) IN GENERAL.—The Secretary may authorize supplemental assistance necessary to defray reasonable transportation and subsistence expenses incurred by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in connection with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under subparagraph (A) if such assistance is provided at facilities that are not within normal commuting distance of the regular place of residence of the producer.

“(ii) EXCEPTIONS.—The Secretary may not authorize payments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under clause (i)—

“(I) for subsistence expenses that exceed the lesser of—

“(aa) the actual per diem expenses for subsistence incurred by the producer; or

“(bb) the prevailing per diem allowance rate authorized under Federal travel regulations; or

“(II) for travel expenses that exceed the prevailing mileage rate authorized under the Federal travel regulations.

“(2)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A producer that has completed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Such assistance shall consist of—

“(A) a series of courses to further assist the producer i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er in producing—

“(i) the agricultural commod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ducer was certified under this chapter; or

“(ii) another agricultural commodity; and

“(B) assistance in developing an initial business plan based on the courses completed under subparagraph (A).

“(3) INITIAL BUSINESS PLAN.—

“(A) APPROVAL BY SECRETARY.—The Secretary shall approve an initial business plan developed under paragraph (2)(B) if the plan—

“(i) reflects the skills gained by the producer through the courses described in paragraph (2)(A); and

“(ii) demonstrates how the producer will apply those skills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roducer.

“(B) FINANCIAL ASSISTANCE FOR IMPLEMENTING INITIAL BUSINESS PLAN.—Upon approval of the producer's initial business plan by the Secretary under subparagraph (A), a producer shall be entitled to an amount not to exceed \$4,000 to—

“(i) implement the initial business plan; or

“(ii) develop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under paragraph (4).

“(4)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A) IN GENERAL.—A producer that has completed 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and whose initial business plan has been approved under paragraph (3)(A) shall be eligible for, in addition to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C), assistance in developing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B) APPROVAL OF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S.—The Secretary shall approve a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developed under subparagraph (A)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plan—

“(i) includes steps reasonably calculated to materially contribute to the economic adjustment of the producer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i)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employed by the producer; and

“(iii) demonstrates that the producer will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implement the business plan.

“(C) PLAN IMPLEMENTATION.—Upon approval of the producer’s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under subparagraph (B), a producer shall be entitled to an amount not to exceed \$8,000 to implement the long-term business adjustment plan.

“(c) MAXIMUM AMOUNT OF ASSISTANCE.—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may receive not more than \$12,000 under paragraphs (3) and (4) of subsection (b) in the 36-month period following certification under section 293.

“(d) LIMITATIONS ON OTHER ASSISTANCE.—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that receives benefits under this chapter (other than initial technical assistance under subsection (b)(1)) shall not be eligible for cash benefits under chapter 2 or 3.”.

(b) CLERICAL AMENDMENT.—The table of contents of the Trade Act of 1974 is amended by striking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296 and inserting the following:

“Sec. 296. Qualifying requirements and benefits for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 SEC. 1884. REPORT.

Section 293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b)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d) REPORT BY THE SECRETARY.—Not later than January 30, 2010, and annually thereafter,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port contain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under this chapter during the preceding fiscal year:

“(1) A list of the agricultural commodities covered by a certification under this chapter.

“(2) The States or regions in which such commodities are produced and the aggregate amount of such commodities produced in each such State or region.

“(3) The total number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by congressional district, receiving benefits under this chapter.

“(4) The total number of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by congressional district, receiving technical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 SEC. 1885. FRAUD AND RECOVERY OF OVERPAYMENTS.

Section 297(a)(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f(a)(1)) is amended by inserting “or has expended funds received under this chapter for a purpose that was not approved by the Secretary,” after “entitled,”.

#### SEC. 1886. DETERMINATION OF INCREASES OF IMPORTS FOR CERTAIN FISHERMEN.

For purposes of chapters 2 and 6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251 et seq.), in the cas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that—

(1) is a fisherman or aquaculture producer, and

(2) is otherwise eligible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chapter 2 or 6, as the case may be,

the increase in imports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such producer may be based on imports of wild-caught seafood, farm-raised seafood, or both.

**SEC. 1887. EXTEN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Section 298(a)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01g(a)) is amended by striking “fiscal years 2003 through 2007” and all that follows through the end period and inserting “fiscal years 2009 and 2010, and \$22,500,000 for the period beginning October 1, 2010, and ending December 31, 2010,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ncluding administrative costs, and salaries and expenses of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PART V—GENERAL PROVISIONS**

**SEC. 1891. EFFECTIVE DATE.**

(a) **IN GENERAL.**—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and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is subtitle and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ubtitle—

(1)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the 9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2) shall apply to—

(A) petitions for certification filed under chapter 2, 3, or 6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B) petitions for assistance and proposals for grants filed under chapter 4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after such effective date.

(b) **CERTIFICATIONS MADE BEFORE EFFECTIVE DATE.**—Notwithstanding subsection (a)—

(1) a worker shall continue to receive (or be eligible to rece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other benefits under subchapter B of chapter 2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described in subsection (a)(1), for any week for which the worker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uch chapter 2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if the worker—

(A) is certified as eligible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such chapter 2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221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before such effective date; and

(B) would otherwise be eligible to rece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such chapter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2) a worker shall continue to receive (or be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under section 246(a)(2) of the Trade Act of 1974,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described in subsection (a)(1), for such period for which the worker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ection 246 of that Act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if the worker—

(A) is certified as eligible for benefits under such section 246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221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before such effective date; and

(B) would otherwise be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under such section 246(a)(2)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and

(3) a firm shall continue to receive (or be eligible to receive) adjustment assistance under chapter 3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described in subsection (a)(1), for such period for which the firm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uch chapter 3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if the firm—

(A) is certified as eligible for benefits under such chapter 3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251 of the Trade Act of 1974 on or before such effective date; and

(B) would otherwise be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under such chapter 3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SEC. 1892. EXTEN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S.**

(a) **FOR WORKERS.**—Section 245(a)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317(a)) is amended by striking “December 31, 2007” and inserting “December 31, 2010”.

(b) **TERMINATION.**—Section 285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271 note prec.) is amended—

(1) in subsection (a), by striking “December 31, 2007” each place it appears and inserting “December 31, 2010”; and

(2) by amending subsection (b) to read as follows:

“(b) **OTHER ASSISTANCE.**—

“(1) **ASSISTANCE FOR FIRM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echnical assistance and grants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3 after December 31, 2010.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approved under chapter 3 on or before December 31, 2010, may be provided—

“(i) to the extent funds are available pursuant to such chapter for such purpose; and

“(ii) to the extent the recipient of the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such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as the case may be.

“(2) **FARMER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echnical assistance and financial assistance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6 after December 31, 2010.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technical or financial assistance approved under chapter 6 on or before December 31, 2010, may be provided—

“(i) to the extent funds are available pursuant to such chapter for such purpose; and

“(ii) to the extent the recipient of the technical or financial assistance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such technical or financial assistance, as the case may be.

“(3) **ASSISTANCE FOR COMMUNITIE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echnical assistance and grants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4 after December 31, 2010.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approved under chapter 4 on or before December 31, 2010, may be provided—

“(i) to the extent funds are available pursuant to such chapter for such purpose; and

“(ii) to the extent the recipient of the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such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as the case may be.”.

**SEC. 1893. TERMINATION; RELATED PROVISIONS.**

(a) SUNSET.—

(1) IN GENERAL.—Subject to paragraph (2),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ubtitle to chapters 2, 3, 4, 5, and 6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271 et seq.) shall not apply on or after January 1, 2011.

(2) EXCEPTION.—The amendments made by this subtitle to section 285 of the Trade Act of 1974 shall continue to apply on and after January 1, 2011, with respect to—

(A) workers certified as eligible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chapter 2 of title II of that Act pursuant to petitions filed under section 221 of that Act before January 1, 2011;

(B) firms certified as eligible for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s under chapter 3 of title II of that Act pursuant to petitions filed under section 251 of that Act before January 1, 2011;

(C) recipients approved for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s under chapter 4 of title II of that Act pursuant to petitions for assistance or proposals for grants (as the case may be) filed pursuant to such chapter before January 1, 2011; and

(D)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s certified as eligible for technical or financial assistance under chapter 6 of title II of that Act pursuant to petitions filed under section 292 of that Act before January 1, 2011.

(b) APPLICATION OF PRIOR LAW.—Chapters 2, 3, 4, 5, and 6 of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271 et seq.)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beginning January 1, 2011, as if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ubtitle (other than part VI) had never been enacted, except that in applying and administering such chapters—

(1) section 245 of that Act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by substituting “2011” for “2007”;

(2) section 246(b) of that Act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by substituting “December 31, 2011” for “the date that is 5 years” and all that follows through “State”;

(3) section 256(b) of that Act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by substituting “the 1-year period beginning January 1, 2011” for “each of fiscal years 2003 through 2007, and \$4,000,000 for the 3-month period beginning October 1, 2007”;

(4) section 298(a) of that Act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by substituting “the 1-year period beginning January 1, 2011”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and all that follows through “October 1, 2007”; and

(5) subject to subsection (a)(2), section 285 of that Act shall be applied and administered—

(A) in subsection (a), by substituting “2011” for “2007” each place it appears; and

(B) by applying and administering subsection (b) as if it read as follows:

“(b) OTHER ASSISTANCE.—

“(1) ASSISTANCE FOR FIRM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assistance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3 after December 31, 2011.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assistance approved under chapter 3 on or before December 31, 2011, may be provided—

“(i) to the extent funds are available pursuant to such chapter for such purpose; and

“(ii) to the extent the recipient of the assistance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such assistance.

“(2) FARMER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assistance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6 after December 31, 2011.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assistance approved under chapter 6 on or before December 31, 2011, may be provided—

“(i) to the extent funds are available pursuant to such chapter for such purpose; and

“(ii) to the extent the recipient of the assistance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such assistance.”.

**SEC. 1894.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Not later than September 30, 2012,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ubtitle to chapters 2, 3, 4, and 6 of the Trade Act of 1974.

**SEC. 1895. EMERGENCY DESIGNATION.**

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is subtitle are designated as an emergency requirement and necessary to meet emergency needs pursuant to section 204(a) of S. Con. Res. 21 (110th Congress) and section 301(b)(2) of S. Con. Res. 70 (110th Congress), the concurrent resolutions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s 2008 and 2009.

**PART VI—HEALTH COVERAGE IMPROVEMENT**

**SEC. 1899. SHORT TITLE.**

This part may be cited as the “TAA Health Coverage Improvement Act of 2009”.

**SEC. 1899A. IMPROVEMENT OF THE AFFORDABILITY OF THE CREDIT.**

(a) IMPROVEMENT OF AFFORDABILITY.—

(1) IN GENERAL.—Section 35(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relating to 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of eligible individuals) is amended by inserting “(80 percent